연구보고서 2018-02

데이트폭력과 충북의 대응전략 과제

연구책임 **한애경**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연구지원 **안수연** (충북여성재단 위촉연구원)

충북여성재단
CHUNGBUK WOMEN FOUNDATION

발 간 사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는 여타의 범죄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성 대상의 대표 범죄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정책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경우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라는 이유로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높이고 심지어 보복범죄로 인해 생존의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는 올해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데이트폭력 예방과 근절의지를 천명하고 각 부처별 정책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이러한 정책동향에 근거하여 충북의 지역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가 충북의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견을 주신 학계와 현장 전문가,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심층연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신 당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아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방법

○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폭력범죄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데이트 폭력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이는 우리사회가 데이트폭력 문제를 단순히 연인 간 또는 당사자 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피해의 정도나 심각성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피해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임. 최근에는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이별범죄 성격의 스토킹까지 더해져 여성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14,136건으로 전년대비 50.9%p 증가하였으며 그중 가해자가 입건된 경우는 10,303명으로 과거 3년 전에 비해 23%p 증가하였음.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전국) 조사결과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못지않게 데이트폭력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여성대상의 대표적 폭력범죄로 간주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임.

○ 이상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여성의 범죄안전 대응마련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입각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태파악에 나섰고 2016년 2월부터 전국의 각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로를 모색 중임.

○ 최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러 데이트폭력 피해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마련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데이트폭력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여성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시도되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 행정통계, KOSIS, 선행연구 검토, 충북 여성데이트폭력 현황 및 정책 분석,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및 정책분석이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 :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20세 이상 비혼자를 대상으로 성별, 지역, 연령을 임의표집하여 700case를 분석하였음

○ 당사자 인터뷰 :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4명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실무자 FGI :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요구되는 인식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전문가 자문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집행부서 담당자의 의견 수렴, 연구방향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Ⅱ. 데이트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유형

○ '데이트 관계'는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데이트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 정의되어 왔음.

- 이러한 개념정의는 마치 현재 교제관계 있는 경우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사회에서 충격적인 범죄로 사건화 된 사례들은 헤어진 이후의 보복에 따른 범죄, 소위 이별범죄인 경우가 많으며 행위의 주체가 단순히 '미혼남녀'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미혼남녀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비혼 남녀 간에도 폭력이 발생하며, 결혼 후 이혼한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의 개념적 정의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 주목한 데이트관계는 20대~60대로 현재 데이트상대가 있거나 혹은 과거에 데이트관계에 있던 자(과거 1년)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 폭력의 범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여성폭력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으로 구분하였음. 그 중 심리적 폭력은 통제, 지배, 협박, 비하 등 상대를 통제하거나 언어·정서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형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폭력의 하위유형을 통제경험과 언어·정서폭력으로 분류하였음.

2. 데이트폭력 실태

○ 2016년 대비 2017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4,136건으로 전년대비 50.9%p 증가하였음. 가해자의 형사입건은 2016년에 비해 23.1% 증가한 10,303건임. 폭력유형은 폭행과 상해가 가장 많고 체포·감금·협박은 10%를 웃도는 수준임.

-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 실태(건수) 집계가 피의자 기준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입건 되지 않는 범죄까지 포함하여 폭력범죄는 보여지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충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데이트폭력 건수는 2017년 기준 143건으로 그중 폭행 협박은 83건으로 가장 많음.

○ 청주여성의전화에서 집계한 방식에서는 강간과 성추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2017년 52.4%, 2018년 57.1% 차지) 다음 폭행·상해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1.3%로 전국(74.2%)보다 7.1%p 높음. 이러한 결과는 충북지역의 데이트폭력이 전국적 상황보다 심각함을

시사함.

- 충북지역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발생에 관한 검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과자가 7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9범 이상인 경우도 전체 13%를 차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신변보호와 가해자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3.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및 지원체계

○ 충북의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 정책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폭력예방교육과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1366을 비롯한 상담소 운영, 폭력예방교육 점검 등으로 운영되어 왔음.

○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지침이 전달되었음.

- 「스토킹·데이트폭력 폭력예방 종합대책」 정부합동발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발생 시 초기단계, 상담·보호단계, 보호·치료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그 외 상담·보호단계에서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충북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인프라가 청주에 집중하고 있어서 군단위 이하 지역 여성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Ⅲ.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427명(61%), 남성은 273명(39%)이었음. 연령은 20대 ~ 40대가 고르게 분포하였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371명(53%)으로 가장 높음. 미혼인 경우가 486명(69.4%)이며 이혼의 경우도 121명(17.3%) 포함되었음.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이 244명(35.1%)으로 가장 많았음.

○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관한 전체 평균은 2.26점으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간수준 이하를 보임. 성별로는 여성 2.12점, 남성 2.48점으로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 연령에 따른 성역할 태도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60대 이상의 성역할 태도 수준이 높아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폭력허용도는 4점 만점에 1.55점으로 중간수준 이하였음. 그러나 데이트폭력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폭력허용도 수준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데이트폭력 경험은 전체 응답자(n=700) 중 75.6%인 529명이 데이트상대로부터 한번이라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여성 427명 중에서는 326명(76.3%)이 남성은 273명 중에서는 203명(74.4%)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음.

○ 폭력유형에 따른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통제경험은

62.9%, 언어·정서폭력의 경험은 40.7%, 신체적 폭력은 27.4%, 성폭력은 3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통제경험은 여성의 60.7%, 남성의 66.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폭력경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이는 상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통제가 성별을 불문하고 데이트관계에서 빈번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줌.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여성의 폭력경험 비율이 높지만 통제경험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언어폭력은 여성 41.7%, 남성 39.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25.8%)'가 가장 높았고 남성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21.2%)'가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라 문항별 빈도의 차이가(gap) 가장 높은 항목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 찬 말을 했다'로 나타났음.

○ 신체폭력 경험률은 여성의 31.9%, 남성의 20.5%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주목할 점은 다른 폭력 유형에 비해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목을 조르거나' '심하게 맞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폭력 경험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졌음. 이는 여성폭력 피해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함을 시사하는 부분임.

○ 성폭력 경험은 여성의 41.9%, 남성의 24.2%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음. 문항별로는 여성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 있다' 가 34.4%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내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 있다'가 16.5%로 가장 높았음.

○ 폭력이 발생한 시기는 사귄 후 6개월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폭력 발생의 주요 요인은 '일상적인 의견차'에 의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

음. 반면 성폭력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음'과 '데이트상대의 주취상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취상태 범죄위험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범죄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

○ 폭력 장소는 '본인 혹은 상대의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자칫 사적인 공간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거나 범죄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폭력발생시 현장 대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통제경험이나 언어·정서폭력에 비해 신체에 직접적 상해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6%이내이며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은 2% 범위 내에 있음. 이는 피해자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법은'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여성 39.5%, 남성 58.9%).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29.3%는'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하였다'고 응답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경찰의 사고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했다(연계, 지원 등)'는 응답이 23.1%이며 나머지는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 협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소극적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데이트폭력이 있던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전체 37.6%로 여

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관해 남성은 '데이트 상대를 사랑해서'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0.7%로 가장 높았음.

○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 정책유지 영역에 피해자 신변보호와 데이트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2사분면 집중영역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규정, 경찰관 응급조치,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주로 입법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음.

○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경우 필요성이 모두 낮게 인식된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경찰대상 직무교육,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연계 강화, 피해자 법률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같이 지원체계의 기능강화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과제임.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점은 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정책우선순위에서 거리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2. 심층면접 결과

○ **당사자 인터뷰**

- 당사자들은 통제와 협박을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관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 통제경험은 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었으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제경험이 신체폭력에 앞서 경험되고 있었으며 통제경험이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 폭력행위에 대해 일시적인 감정폭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리화하는 과정에 피해자도 동참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신고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거나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혹은 경제적 종속관계로 인한 관계해소의 어려움도 발견되었음.

- 가해자와 헤어지고 난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났음.

- 데이트폭력 예방이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욕구는 예방교육과 홍보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보부족과 대응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매우 취약한 결과로 해석됨.

○ 실무자 FGI

- 현장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비혼자 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꾸준

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 한 달 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노출이나 공간적 한계 등 긴급피난처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학교 내 양성평등상담 센터를 비롯한 학생상담 창구가 취업지원 목적으로 운영되어 여성폭력의 1차적 상담창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데이트폭력에 대해 일반 대중의 인식이 매우 낮아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도 낮다고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IPA 분석결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Ⅳ. 논의 및 제언

1. 데이트폭력관련 정책 방향

○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수한 속성을 반영한 법제도의 마련, 혹은 정비가 필요함.

- 정부의 입법마련이 가장 우선순위 과제라 할 수 있음. 지자체는 기제시된 정부합동발표의 로드맵에 근거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데이트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생애과정별, 대상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 인프라의 확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차원의 입법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1) 정부 차원

○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고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데이트폭력 관련 입법마련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

- 데이트폭력 범죄가 가정폭력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독일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트관계'에 대한 개념정의와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젠더폭력방지법을 제정하거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다수는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79.4%) 가해자 혹은 전과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대두시킴. 영국은 '클레어법'을 통해 가해자의 전과정보를 데이트상대에게 제공하여 데이트관계를 유지할지, 해소할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충청북도 차원

가.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실효성 확보

- 지역차원의 실무매뉴얼 마련,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함.

-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정에 지역 인프라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조직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기관들의 다양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지역에서 실무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건 발생시 신속을 기하기 위해 지역의 지침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유관기관별 참여가 요구됨.

- 아울러 현장종사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학교, 기업 등 교육현장에 투입해야 할 것임.

○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노년층

- 60대 이상 집단이 폭력예방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노년층의 활동반경이 주로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의 경로당을 활용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교육운영을 적극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범죄경력자 대상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 치료패러다임에 입각한 범죄경력자 대상의 폭력예방교육과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함. 충북지역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의 전과경력을 살펴본 결과 79.4%가 전과자인데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의 범죄 전력이 유사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불안감을 높이고 있음. 범죄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이 심리적 불안과 애착의 결핍에의 결과라고 하였음. 이는 범죄경력자 대상의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교정 보다 치료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함을 시사함. 현재 범죄경력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교정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바 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사업지원 방안이 검토될 필요 있음.

나.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 데이트폭력 예방 홍보 강화

-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사업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충북도내 유관기관 등에 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방법적으로는 '데이트폭력예방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과 같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방법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지역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함.

- 아울러 상담소 및 수사기관과 연대한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이 상담과 수사가 필요한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 피해자 보호 및 인프라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 군 단위 지역의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데이트폭력 발생시 1366상담소를 비롯하여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가 중요한 지원체계로서 역할이 요구되지만 충북지역 여성폭력상담소는 11개 시·군 중 5개소로(청주, 충주, 음성, 제천, 영동) 모든 지역에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임. 대부분의 인프라가 도심권에(청주) 집중하고 있어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들이 서비스에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집행부서의 추진의지에 따라 모든 군단위 지역에서 상담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은 4개소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보호시설이 부재한 상황임. 이는 지역에서 폭력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함. 따라서 시군단위별 상담소 설치가 어렵더라도 권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에 보호시설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인프라 취약지역 시설다기능화 방안 검토

- 부족한 인프라를 시설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확충하는 방법 이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인프라 취약지역의 경우 기 시설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농촌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리적 특성을 가짐.

- 따라서 이들 농촌 지역에 산발해 있는 시설들이 자기 소관 대상 이외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게 서비를 제공하는 방식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시설은 신축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대상 외에 다른 기능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여건조사와 검토를 통해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 여성안전 지원체계 구축

- 마을단위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폭력예방 및 모니터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북에는 현재 5개의 상담소가 운영 중임. 11개 시군에서조차 상담소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단위의 여성안전은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실태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노년층의 폭력 경험률이 높은 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임.

- 마을마다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통장 등 주민자치조직을 이용하여 마을단위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주민자치조직과 1366,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마을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의 여성폭력 예방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안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

○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차별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요구됨. 정부종합대책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발생시 1366센터의 긴급피난처에서 최장 한 달 간의 보호를 명시하였으나 공간적 제약과 함께 1366 긴급피난처 주 입소대상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위험 부담이 있음. 이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함. 첫 번째 1366 긴급피난처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장할 경우 현재 2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 확충이 필요함. 아울러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적용하고 일주일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음. 임대주택의 경우 보호시설과는 달리 외부활동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폭력피해자의 특성상 보호 및 자립 준비를 위해 별도의 임대주택 제공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있음.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 수행 절차 ····· 8

Ⅱ. 데이트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젠더폭력 패러다임과 데이트폭력 ····· 11
2.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유형 ····· 14
3. 데이트폭력 실태 및 관련법률 ····· 18
4. 폭력피해자 지원정책 및 지원체계 ····· 30
5. 데이트폭력에 관한 국외 제도·정책 ····· 34

Ⅲ.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 39
2. 심층면접 결과 ····· 72
3. 소결 ····· 84

Ⅳ. 논의 및 제언

1. 데이트폭력관련 정책 방향 ····· 89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 89

표 목차

<표 Ⅰ-1-1>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2017) ····· 3
<표 Ⅰ-1-2> 최근3년 강력범죄 현황(충북) ····· 4
<표 Ⅰ-1-3> 연구수행절차 ····· 8
<표 Ⅱ-1-1>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 ····· 12
<표 Ⅱ-1-2> 사회안전 인식(범죄안전) ····· 13
<표 Ⅱ-3-1>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 ····· 19
<표 Ⅱ-3-2> 전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현황 ····· 20
<표 Ⅱ-3-3> 충북의 데이트폭력 현황 ····· 20
<표 Ⅱ-3-4> 충북 데이트폭력 피해유형 및 피해자 연령 ···· 21
<표 Ⅱ-3-5> 데이트폭력 피해자 성별 ····· 22
<표 Ⅱ-3-6> 충북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연령 ····· 23
<표 Ⅱ-3-7> 데이트폭력 발생지역(충북) ····· 23
<표 Ⅱ-3-8> 피해자 지원조치(충북) ····· 23
<표 Ⅱ-3-9> 가해자의 전과경력(충북) ····· 24
<표 Ⅱ-4-1>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 ····· 30
<표 Ⅱ-4-2> 충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 31
<표 Ⅱ-4-3> 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지원 시설 ····· 33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9
<표 Ⅲ-1-2>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 40
<표 Ⅲ-1-3> 연령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 41
<표 Ⅲ-1-4> 성별에 따른 폭력허용도의 차이 ····· 42
<표 Ⅲ-1-5> 데이트폭력경험과 폭력허용도 ····· 42
<표 Ⅲ-1-6> 연령에 따른 폭력허용도의 차이 ····· 43
<표 Ⅲ-1-7> 성별 폭력경험 ····· 43
<표 Ⅲ-1-8> 유형별 폭력경험 ····· 44
<표 Ⅲ-1-9> 연령별 폭력경험 ····· 45

표 목차

<표 Ⅲ-1-10> 성별 통제경험 ····· 46
<표 Ⅲ-1-11> 연령별 통제경험 ····· 47
<표 Ⅲ-1-12> 성별 언어·정서폭력 경험 ····· 48
<표 Ⅲ-1-13> 연령별 언어·정서 폭력 경험 ····· 49
<표 Ⅲ-1-14> 신체폭력경험 ····· 50
<표 Ⅲ-1-15> 연령에 따른 신체폭력경험 ····· 51
<표 Ⅲ-1-16> 성폭력 경험 ····· 52
<표 Ⅲ-1-17> 연령에 따른 성폭력 ····· 52
<표 Ⅲ-1-18> 폭력발생 시기 ····· 53
<표 Ⅲ-1-19> 폭력발생 주요 요인 ····· 54
<표 Ⅲ-1-20> 폭력발생 장소 ····· 55
<표 Ⅲ-1-21> 폭력발생시 현장 대응(다중응답) ····· 57
<표 Ⅲ-1-22> 성별 폭력발생시 현장대응(중복응답) ····· 58
<표 Ⅲ-1-2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59
<표 Ⅲ-1-24> 경찰의 대응 방식 ····· 60
<표 Ⅲ-1-25>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61
<표 Ⅲ-1-26>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다중응답) ··· 62
<표 Ⅲ-1-27>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 64
<표 Ⅲ-1-28>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 ····· 64
<표 Ⅲ-1-29> 치료경험 ····· 65
<표 Ⅲ-1-30>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 66
<표 Ⅲ-1-31> 폭력이 있었던 상대와의 관계 ····· 66
<표 Ⅲ-1-32> 폭력이 있었던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68
<표 Ⅲ-1-33> IPA 분석의 도식화 ····· 69
<표 Ⅲ-1-34> 정책우선순위 보기 ····· 71
<표 Ⅲ-2-1> 당사자 인터뷰 및 실무자 FGI 참여자 기본정보 · 72

그 림 목 차

<그림 Ⅱ-1-1>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 ····· 12
<그림 Ⅱ-1-2> 사회안전 인식(범죄안전) ····· 13
<그림 Ⅱ-3-1>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 19
<그림 Ⅱ-3-2> 데이트폭력 유형(충북 ····· 21
<그림 Ⅱ-3-3> 피해자 성별 ····· 22
<그림 Ⅱ-3-4> 피해자 지원조치 ····· 24
<그림 Ⅱ-3-5> 가해자 전과경력 ····· 25
<그림 Ⅱ-4-1>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로드맵 ····· 32
<그림 Ⅲ-1-1> 성역할태도 ····· 41
<그림 Ⅲ-1-2> 폭력경험 ····· 43
<그림 Ⅲ-1-3> 유형별 폭력경험 ····· 44
<그림 Ⅲ-1-4> 연령별·유형별 폭력경험 ····· 45
<그림 Ⅲ-1-5> 폭력발생시기 ····· 54
<그림 Ⅲ-1-6> 폭력발생 요인 ····· 55
<그림 Ⅲ-1-7> 폭력발생 장소 ····· 56
<그림 Ⅲ-1-8> 폭력발생시 현장 대응(5순위) ····· 58
<그림 Ⅲ-1-9>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5순위) ····· 59
<그림 Ⅲ-1-10> 경찰의 대응방식 ····· 60
<그림 Ⅲ-1-11>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3순위) ··· 61
<그림 Ⅲ-1-12> 데이트폭력으로인한 심리적 증상(5순위) ····· 63
<그림 Ⅲ-1-13> 치료경험 ····· 65
<그림 Ⅲ-1-14> 폭력이 있던 상대와의 관계 ····· 67
<그림 Ⅲ-1-15> 폭력이 있던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 68
<그림 Ⅲ-1-16> 정책의 적정성·필요성 IPA분석결과 ····· 70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수행 절차

CBWF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예로부터 우리사회는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싸움은 개인의 사적인 일로 취급하여(권혁남, 2017; 하예지·서미경, 2014)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풍습이 있었고, 또한 우리사회가 때때로 '싸우면서 서로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 진다'는 식으로 싸움을 정당화 해왔음. 사회적으로 내재화된 이와 같은 인식의 결과 연인들 간의 싸움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왔음.

○ 하지만 사회가 외면하며 정당화해 온 연인 간 폭력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최근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2차 범죄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경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14,136건으로 전년대비 50.9%p 증가하였으며 그중 가해자가 입건된 경우는 10,303명으로 과거 3년 전에 비해 23%p 증가하였음(경찰청, 2018).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조사결과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못지않게 데이트폭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인관계의 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음.[1)]

○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성별화 되어 나타나며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의 정도나 심각성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피해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임(김성언, 2010).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74.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중 여성의 약 30% 정도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남성에 비해 심한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음(서경현·이경순, 2002; Molidor & Tolman, 1998; 정윤주, 2008 재인용).

2) <표 Ⅰ-1-1>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2017)

(단위 :건,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	기타
건수	827	869	407	258	5	577
비율(%)	28.1	29.5	13.8	8.8	0.2	19.6

4 데이트폭력과 충북의 대응전략 과제

○ 충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81.3%가 여성이며 그 중 폭행, 협박, 상해가 전체 82%를 차지하여(충북지방경찰청, 2017),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이 여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충북지역의 범죄안전지수가 3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성비가 악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2)]

○ 폭력범죄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사회의 젠더질서가 성차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여성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점임(심진경, 2011; 신상숙, 2018; 권혁남, 2017). 그나마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이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일정부분 안전장치 역할을 감당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가정폭력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신체적 상해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가 된 경우에만 폭력 범죄로 다루어져왔음.

○ 즉, 심리적 폭력과 같이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경범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수위도 매우 낮음[3)]. 그러나 신체폭력이나 성폭력 못지않게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나 언어·정서폭력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신체폭력으로 이행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Karakurt & Silver, 2013; Mclewin & Muller, 2006; 오윤성, 2017).

---

3) 〈표 Ⅰ-1-2〉 최근3년 강력범죄 현황(충북)

(단위 :건,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총계	47,807	101	96	1,905	19,230	26,475
2015년	17,173	34	43	572	7562	8,962
2016년	16,130	32	26	626	6130	9,316
2017년	14,504	35	27	707	5538	8,197

3)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경범죄가 적용되어 1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 이상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전국의 각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기 시작했음.

○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새 정부는 젠더폭력방지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개입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올해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들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차원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이하의 연구는 그간의 정책 동향과 최근 정부의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데이트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충북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임. 먼저 데이트폭력의 개념적 특성과 현재까지의 논의상황을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충북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데이트관계'를 비혼자에 한정하였고 데이트폭력 범죄 현황 및 관련연구를 검토하였음. 국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하여 충북지역의 데이트폭력 정책수립에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당사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충북지역 데이트폭력의 경향성을 살펴보았음. 정책수

요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IPA 분석이 이루어졌음.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 학계전문가 집행부서 등과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쳤음. 각각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문헌연구

- 행정통계, KOSIS,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음.
-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법안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충북의 데이트폭력 현황 과 피해자 지원체계 검토를 통해 충북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음.

2) 설문조사

- 조사지역은 충청북도 11개 시·군으로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비혼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Sampling은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한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최종 700case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조사기간은 2018. 5. 28부터 ~ 6. 16까지 20일간 진행되었음.

3) 당사자 인터뷰

- 데이트폭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경험과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개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인터뷰에 참여할 대상자는 유관기관 실무자 추천과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음.
- 최종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4명임.

4) 실무자 FGI

-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FGI(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음. 현장 실무자는 1366을 비롯하여 통합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 4개소의 실무자로 구성되었음.
- 실무자 대상 인터뷰는 현장에서의 데이트폭력 경험, 피해자 지원인식 및 지원과정에서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5) 전문가 자문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집행부서 담당자 등 전문가를 구성하여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문이 이루어졌음.
- 실태조사에 따른 내용공유와 지역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졌음.

3. 연구 수행 절차

○ 본 연구의 수행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Ⅰ-1-3> 과 같음.

〈표 Ⅰ-1-3〉 연구수행절차

연구계획수립	- 조사설계
선행연구 분석	- 충북지역 데이트폭력 실태파악 - 데이트폭력 연구동향 분석 - 해외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 데이트폭력 조사 설계 자문 -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착수 및 분석	- 설문조사 착수 • 문항수 : 80문항 • 조사대상 : 비혼자 700명
심층인터뷰	- 당사자 인터뷰 - 실무자 FGI
정책간담회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보고회	- 연구결과 공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보고서발간	- 연구보고서 발간

II. 데이트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젠더폭력 패러다임과 데이트폭력
2.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유형
3. 데이트폭력 실태 및 관련 법률
4. 폭력피해자지원정책 및 지원체계
5. 데이트폭력에 관한 국외 제도·정책

CBWF

1. 젠더폭력 패러다임과 데이트폭력

○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 유형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범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임. 여성폭력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라든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과 같은 여성운동의 캠페인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유엔은 1993년 선언을 통해 그 정의를 제시하면서 여성폭력이 그 특성상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음.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선언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이 공·사 영역을 망라하여 이루어지는 까닭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여성들의 낮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와 젠더폭력이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임.

○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와 실태조사의 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듯이, 젠더폭력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즉 면식자(acquaintance)에 의한 폭력의 발생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일반적으로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임(신상숙, 2018).

○ 젠더폭력의 이러한 특성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여타의 폭력 범죄들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의 특성 및 사건 해결 과정의 난맥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면식자 폭력은 공간분리의 곤란, 신뢰관계의 함정 등으로 말미암아 폭력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어 피해가 커지기 쉬우며, 폭력을 인지하여 신고하고 해결하는 과정의 곤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대표적인 면식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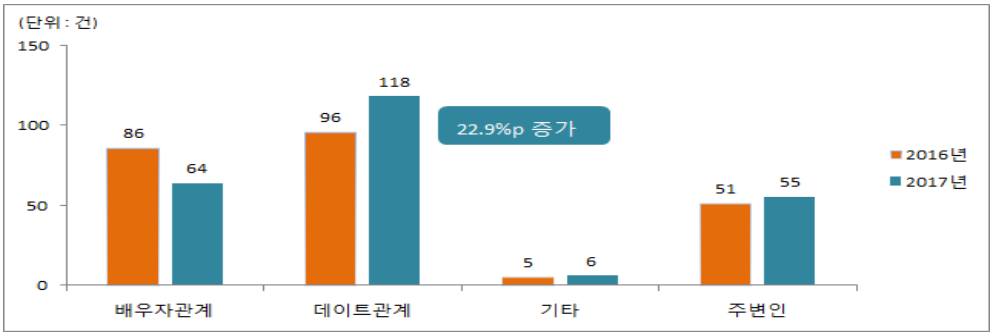
○ 최근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를 돌아보아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음[4].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집계한 '언론에서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에 따르면 배우자관계에서의 살인은 감소한 반면 데이트관계에서의 살인은 22.9%p 증가하였음.

〈표 Ⅱ-1-1〉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

(단위 : 건)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주변인	총계
2016년	86	96	5	51	238
2017년	64	118	6	55	243

주 : 한국여성의 전화, 2018



〈그림 Ⅱ-1-1〉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

○ 문제는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데이트관계에서의 스토킹이나 살인사건의 경우처럼 폭력이 심각하게 자행된 후에 정보를 전달받는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취할 수 있음. 즉, 통제나 언어·정서폭력과 같이 신체적 상해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임. 선행연구들은 데이트상대로부터 경험하는 과도한 통제경험과 언어·정

4) 2018. 6. 12 데이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가위에 목을 찔리는 사고를 당함(인사이트). 2018. 6. 18.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여자친구의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부친사망, 나머지가족 중태(노컷뉴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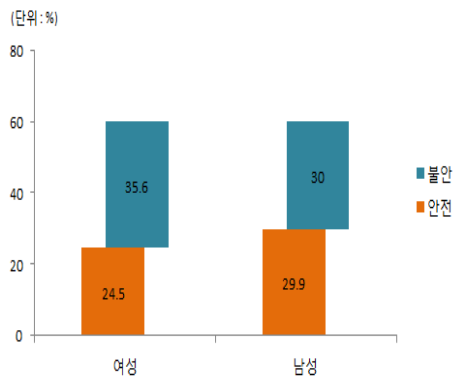
서폭력의 경우에도 신체적 상해와 다름없이 심각한 외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결국 신체적 폭력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하여 (Karakurt & Silver, 2013; Mclewin & Muller, 2006) 폭력유형을 막론하고 데이트폭력 경험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였음.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데이트폭력 문제가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을 피해자화 하고 있고 과정에서 여성들은 살인까지 감당해야 할 정도로 생존에 심각한 위협마저 안고 있다는 점임. 충북지역의 사회안전지수(범죄안전)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불안도가 높은 점, 충북지역의 3년 연속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안전 지수가 여전히 높은 점은[5] 지역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다양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Ⅱ-1-2〉 사회안전 인식(범죄안전)

(단위 : 점, %)

구분	5점	종합평가		
		안전	보통	불안
충북	2.90	25.9	40.7	33.4
여성	2.84	24.5	40.0	35.6
남성	2.96	29.9	40.1	30.0

주 : 2017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



〈그림 Ⅱ-1-2〉 사회안전 인식(범죄안전)

5)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충북의 범죄안전 지수는 4등급을 유지하여 제주지역에 이어 범죄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2.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유형

1) 데이트폭력의 개념

○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은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여전히 피해 자체가 의심받거나 비가시화되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맥킨논(Mackinnon, 1989)이 지적했듯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음(Amar & Gennare, 2005; Teen Voce, 2006). 실제로 데이트폭력은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폭력이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며(배수희·손승영, 2016)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이를 애정으로 위장하여 인내를 강요하거나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음(하예지·서미경, 2014).

○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데이트 관계'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의 '폭력'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데이트폭력의 개념은 상이하게 이해될 수 있음.

○ 먼저의 '데이트 관계'는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박선영 외 2016)또는 데이트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으로 정의되어 왔음(장민선, 2015).

- 이러한 개념정의는 마치 현재 교제관계 있는 경우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사회에서 충격적인 범죄로 사건화 된 사례들은 헤어진 이후의 보복에 따른 범죄, 소위 이별범죄인 경우가 많으며 행위의 주체가 단순히 '미혼남녀'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들 들어 학내에서의 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비혼 남녀 간에도 발생하며, 결혼 후 이혼한 남녀 간 내지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기혼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의 개념적 정의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함.

- 지금까지 발의된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에서도 '미혼 남녀 간의 연애관계'에만 한정시켜서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제중인 관계 뿐 아니라 과거 교제를 하였던 관계가 데이트 폭력의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친밀감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전반을 데이트폭력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폭력'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임. 이 논의에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Stets(1992)는 '데이트 중 상대방에게 신체적 해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여 신체적 폭력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음. Beyer 등(2000)은 데이트폭력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나누어 범위를 좀 더 확장하였음. 여기서 심리적 폭력은 통제, 지배, 협박, 비하 등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고, 신체적 폭력은 통제, 지배, 협박, 위해 혹은 통제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임.

- 그리고 성적폭력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려는 것을 포함함. 국내에서는 김용미(1996)가 데이트 폭력을 '결혼 전 단계의 이성교제와 구애단계에 있는 남녀 간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으며 이영숙(1998)은 '미혼남녀가 결혼 전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

든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하여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언어적 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서경현 등(2010)은 데이트폭력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으로 나누었음. 그들의 정의에 의하면 심리적 폭력에는 정석적 혹은 언어적 공격 및 행동이 해당되고, 신체적 폭력에는 신체적 공격 시도나 공격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음. 성폭력은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성행동을 위한 위험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는 몇 가지 논란이 있음. 우선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개념에 공통적으로 신체적 폭력은 포함되지만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심리적 폭력을 명확히 개념정의에 포함시킨 연구자도 있으나 이를 언어적 폭력에 한정시킨 경우도 있음. 더욱이 성적폭력은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데이트 강간(date rape)으로 다른 폭력과 구별된 설명모델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Lundberg-Love & Geffner, 1989)도 있음. 하지만 성적폭력은 보통 심리적·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적 폭력을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경향이 많음.

2) 데이트폭력의 유형

○ 일종의 심리적 폭력으로 '통제'가 있음.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삶의 마음을 불안하게 함. 이러한 심리적 폭력은 단순히 감시의 정도가 아닌 심한 사람은 노예처럼 자신의 하루 일과를 연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하는 등 상대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여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 이런 유형은 심리적 감금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우울증을 동반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차단되어 점점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심

하면 추후에는 대인기피증까지 야기하게 됨. 이러한 유형은 표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형태라서 심각성은 오히려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보다 심각하여 각종 심리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발견됨(신상숙, 2018)

○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내지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말이나 욕설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언어·정서적 폭력'이 있음.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대부분 성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음(오세연·곽영길, 2011).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스스로 콤플렉스 등으로 인해 혼자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함.

- 이러한 유형은 언어적 폭력을 가한 후에 더 나아가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본 유형은 데이트 폭력의 가장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서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 장래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데이트폭력 중 가장 심각하고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력'이 있음.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위협 또는 협박을 하거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주변의 물건 내지 상대방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인 구타를 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가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음(강효진·박지환, 2013).

-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가하고 술이 깨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결국 본 유형은 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 및 사과와 용서, 다시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다른 유형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됨.

○ 데이트 관계에서 스킨쉽이란 양쪽의 동의하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 경우 '성폭력'에 해당됨(오세연·곽영길, 2011).

-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전화 등이 해당되며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음.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 일컬음.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이성과의 교제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며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이외에도 몰래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유통하는 몰카 범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이는 본 연구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주목한 반면 몰카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데이트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3. 데이트폭력 실태 및 관련 법률

1) 데이트폭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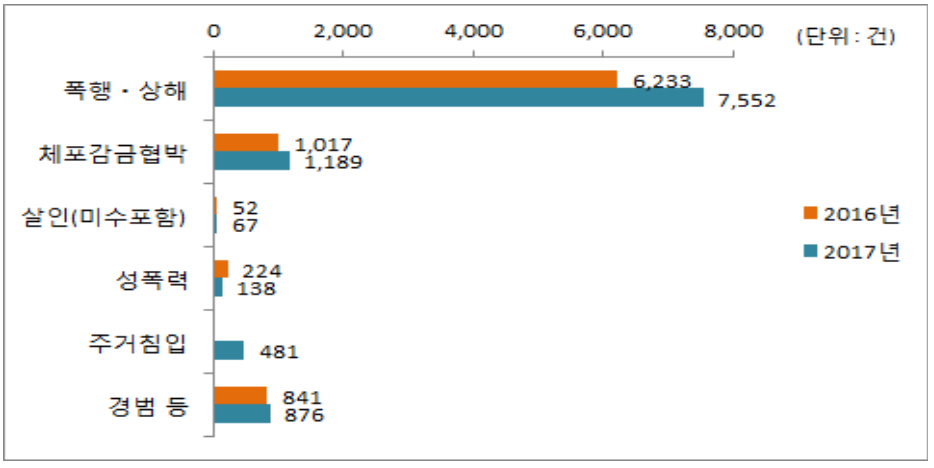
○ 2017년 전국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4,136건으로 전년대비 50.9%p 증가하였음.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경우는 10,303건으로 2016년 대비 23.1% 증가한 수치임. 폭력유형은 폭행과 상해가 가장 많으며 체포·감금·협박은 10%를 웃도는 수준임.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 실태(건수) 집계가 피의자 기준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폭력범죄는 보여지는 수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표 Ⅱ-3-1〉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

(단위 : 건)

	신고 건수	형사입건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주거침입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16년	9,364	8,367	6,233	1,017	18	34	224	-	841
'17년	14,136	10,303	7,552	1,189	17	50	138	481	876

주 : 경찰청, 2018



〈그림 Ⅱ-3-1〉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 한 달 동안 운영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에 집계된 데이트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신고건수 39.9% 증가, 형사입건은 42.1%가 증가하였음.

<표 Ⅱ-3-2> 전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현황

(단위 : %)

구분	신고기간	신고건수(건)		형사입건(명)	
		총계	일평균	총계	일평균
'16년	29일(2.3~3.2)	1,279	44.1	867	29.9
'17년	39일(7.24~8.31)	2,407	61.7	1,658	42.5
전년대비		일평균 39.9% 증가		일평균 42.1% 증가	

주 : 경찰청, 2018

○ 충북지역의 데이트폭력 현황은 2017년부터 집계되었음. 중앙의 집계방식과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리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집계방식도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충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데이트폭력 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143건으로 그중 폭행협박은 83건, 상해 34건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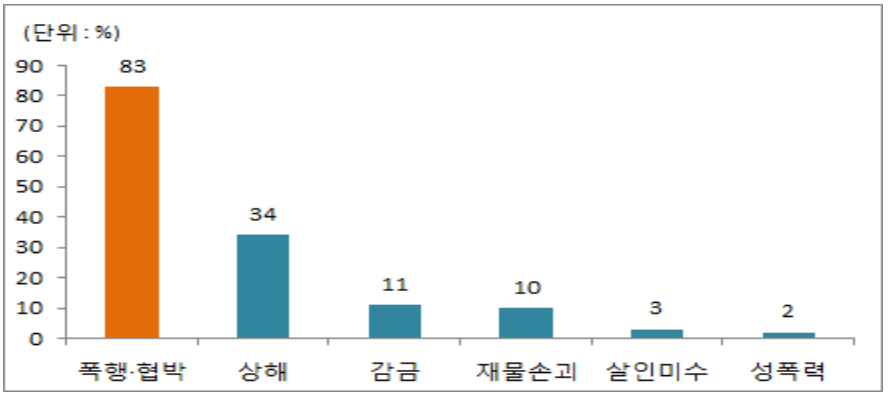
<표 Ⅱ-3-3> 충북의 데이트폭력 현황

(단위 : 명)

계	폭행·협박	상해	감금	재물손괴	살인미수	성폭력
143	83	34	11	10	3	2

주 :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7년 12월 기준)

6)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는 형사 입건된 사건의 수를 의미함. 데이트폭력에 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상황임.



〈그림 Ⅱ-3-2〉 데이트폭력 유형(충북)

○ 청주여성의전화에서 집계한 데이트폭력 건수는 강간과 성추행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 폭행·상해, 감금협박 순으로 나타났음[7]. 2017년 강간 성추행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2.4%에서 2018년 57.1%로 4.7%p 증가하였음. 자료가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연말기준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됨.

〈표 Ⅱ-3-4〉 충북 데이트폭력 피해유형 및 피해자 연령

(단위 : 건)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데이트폭력 피해자 연령				
'17	전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언어 정서	재물 손괴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미파악
	122	64	39	11	7	1	0	32	64	24	1	1
'18	63	36	11	7	8	0	1	18	22	21	2	0

주 : 청주여성의전화 내부자료, 2017. 12, 2018년 자료는 6월말 기준임.

○ 피해자의 성별은 전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74.2%, 남성 피해자는 8.3%, 쌍방책임은 17.5%로 데이트폭력 문제가 일반 폭력범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

7)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의 경우 상담내용이 13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가정폭력 비율이 53.3%, 성폭력 4.8%, 본인 신상이 21.4%이며 데이트폭력은 전체 상담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는 지점임. 데이트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차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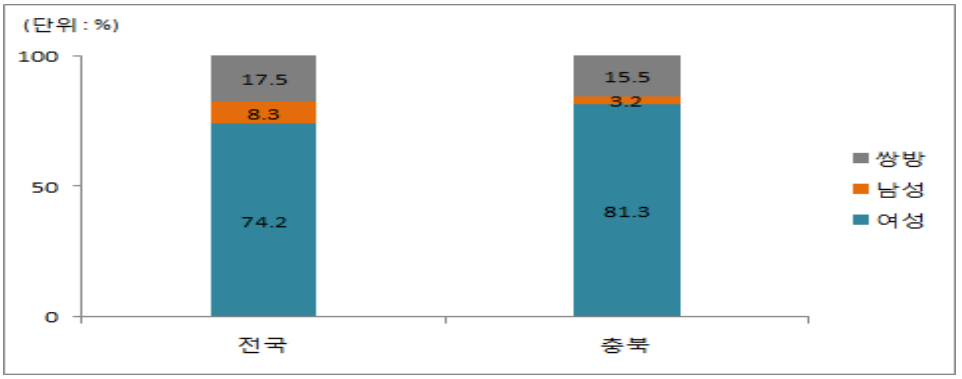
○ 충북지역의 경우 여성피해자 비율이 81.3%로 전국(74.2%)보다 7.1%p높음. 이는 충북지역 데이트폭력이 전국 상황보다 심각함을 시사함.

〈표 Ⅱ-3-5〉 데이트폭력 피해자 성별

(단위 : 명, %)

	계	여성	남성	쌍방
전국	11,737	8,703(74.2%)	977(8.3%)	2,057(17.5%)
충북	155	126(81.3%)	5(3.2%)	24(15.5%)

주 : 경찰청, 2018,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



〈그림 Ⅱ-3-3〉 피해자 성별

○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은 피해자는 2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40명으로 뒤를 잇고 있음. 가해자는 40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가 각각 41명으로 나타났음.

8) 데이트폭력 건수는 피의자를 기준으로 실태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쌍방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전체 피해자 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Ⅱ-3-6〉 충북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연령

(단위 : 명)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피해자연령	155	7	51	32	40	22	3
가해자연령	155	1	41	41	49	16	7

주 :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

○ 지역별 데이트폭력은 청주지역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제천 16건 충주 14건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Ⅱ-3-7〉 데이트폭력 발생지역(충북)

(단위 : 건)

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영동	옥천	보은	단양	괴산	진천
143	87	14	16	7	4	6	1	3	3	2

주 :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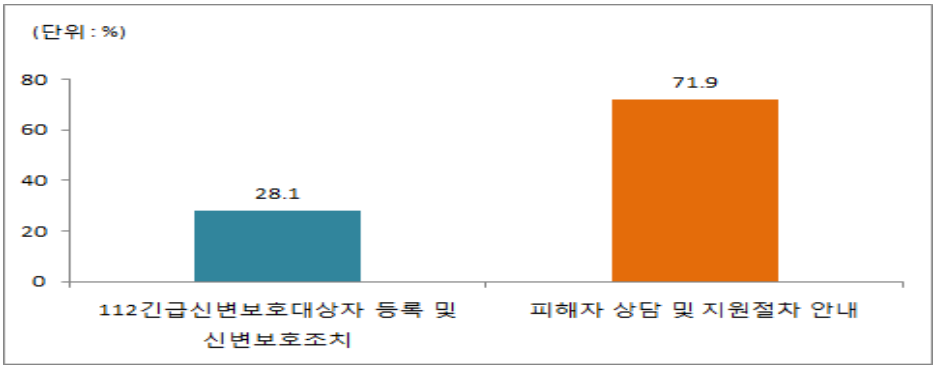
○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는 피해자 상담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는 정도가 92건(71.9%)인데 반해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는 36건(28.1%)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유형이 폭행, 협박, 상해의 빈도가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Ⅱ-3-8〉 피해자 지원조치(충북)

(단위 : 건, %)

계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및 신변보호조치	피해자 상담 및 지원절차 안내
128	36(28.1%)	92(71.9%)

주 :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



〈그림 Ⅱ-3-4〉 피해자지원조치

○ 데이트 폭력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보복범죄의 우려가 높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전과경력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충북지역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발생에 관한 검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과자가 79.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국의 62.3%를 상회하고 있음[9]. 이러한 결과는 재범발생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신변보호활동과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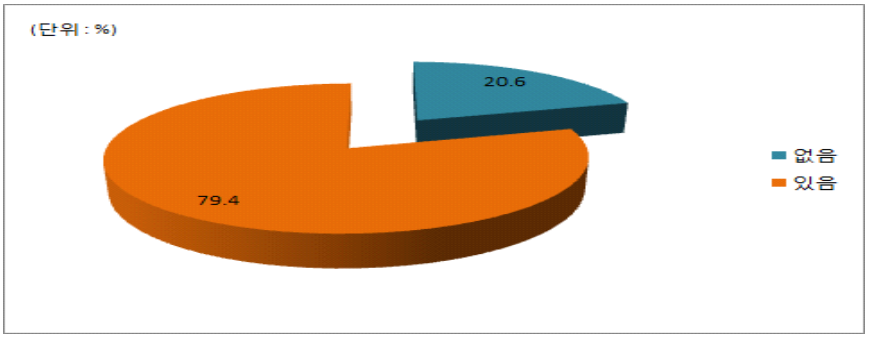
〈표 Ⅱ-3-9〉 가해자의 전과경력(충북)

(단위 : 건)

구분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155	32	24	20	18	12	6	12	8	3	20

주 :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

9) 경찰청(2018)



〈그림 Ⅱ-3-5〉 가해자 전과경력

2)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1) 기존 법제도의 한계

○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물론 데이트폭력에 대해 처벌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님. 위반정도에 따라 형법 및 특별형법에 의거한 통상적인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데이트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특수성이 가해자 처벌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폭력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등의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범죄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최근 심각한 범죄유형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임.

○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지속성과 상습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사후진압 형식의 가해자처벌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오히려 2차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 할 것임. 유사한 속성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전무한 상황임.

(2) 새로운 대응 입법의 시도

○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되어 왔음. 구체적인 특례 법안으로, 1999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2005년에 '스토킹 등 대인공포 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안', 2009년에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3년에 '스토킹 방지법안', 2015년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등이 있으며 2016년 2월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등이 발의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지·철회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음.

○ 이번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주로 법적근거를 요구하는 항목이 신설되었다는 점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1.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스토킹’ 죄목 및 처벌 조항 신설

-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 경찰관의 응급조치 · 긴급잠정조치 규정마련

-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조사제 실시

-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조사 수행.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사의 전문성제고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

□ 데이트폭력 처벌 사건처리 기준 등 마련

○ 데이트폭력처벌 강화를 위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 추진

- 새로운 법률제정보다 사건처리 단계에서 데이트폭력피해자가 주로 여성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여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접근하는 방향

○ 데이트폭력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 개선 근거마련 검토

-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사실혼관계가 아닌 동거관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방안 검토.

2. 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경찰의 사건 대응능력 강화

-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 '스토킹 범죄 처벌법' 상 전담조사제 실시를 위한 전문수사인력 및 피해자보호,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추진
- 2018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실시(7월~ 8월)

○ 사건발생 시 초동조치 강화 및 엄정 대응

- 신고접수 후 즉시 현장출동, 가·피해자 격리 후 진술청취 등 적극적인 초동대처 실시.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장' 발부
- 폭행·협박 수반 시 형사입건 등 강경대응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

-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건 출동 시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 서면교부, 담당형사-피해자 간 hot-line 구축,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CCTV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모니터링 등

3.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스토킹 처벌법과 연계, 피해자 지원시설, 서비스에 관한 조치 사항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

- 여성긴급전화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활성화
-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실시

-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장 1개월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및 치료회복 서비스 제공

- 법무부 홈닥터와 연계한 피해자 법률 상담 등 지원
- 피해자 회복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심리치료 지원서비스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운영(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사항 포함)

4.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 확대

- (공공부문)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 포함 실시
- (일반부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교과서, 교원양성과정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교육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대중매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TV강연 등 활용 메시지 표출
- (온라인) 주요포탈 연계, 온라인 카드뉴스, 이벤트 등 온라인 홍보 확대
- (캠페인)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등 대국민 캠페인 실시

4.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및 지원체계

1)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 정부

○ 여성폭력 관련 지원정책은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정책,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및 지원정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정책은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앞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포괄적 지원방안이 향후 정부정책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임.

〈표 Ⅱ-4-1〉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

	사업명	사업내용
여성 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점검 ·지원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교육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피해자 긴급지원 보호
보건 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및 그밖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주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충북

○ 충북의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폭력 예방 및 홍보,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 자립지원, 제도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폭력예방 교육은 주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의무교육 중심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었음. 폭력피해여성 지원 사업으로 군 단위 이하 상담소가 없는 시설 등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을 목표로 1366의 현장출동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폭력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정책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4-2〉 충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폭력예방 교육・홍보	폭력취약집단별(아동, 장애인 등) 맞춤형 예방교육
	도청 공직자 대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방지 관련 문화활동(캠페인)
	전광판을 이용한 여성폭력근절 운동 추진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1366긴급지원(현장출동 상담)
	긴급일시피난처 환경개선
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활성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자립형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제도운영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유해업소 단속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운영
	여성폭력통계 생산 및 집적

주 : 여성정책관실 내부자료, 2018년

2)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 정부

○ 최근 정부합동부처의 발표에 따라 3단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로드맵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르면 초기상담단계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사이버상담, 경찰접수 후 현장상담원 파견 등으로 초기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보호단계에서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 보호가 이루어짐.

- 데이트폭력 발생 시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협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단계에서 상담소 이외에 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음. 다만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한 최장 1개월간의 긴급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지원내용	피 해 자		
	초기단계	유선・대면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
		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 (실시간 채팅, 카카오톡 상담 가능)
		현장 상담	사건발생(경찰접수)→경찰요청→1366상담요원 현장출동 상담
	상담・보호단계	전문상담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
		일시보호	1366 긴급피난처(최장 1개월)
	보호・치료단계	치료회복 프로그램지원	통합상담소
		심리치료지원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법무부 홈닥터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주 : 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정부합동발표, 2018. 2.

〈그림 II-4-1〉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로드맵

(2) 충북

○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시 1366 통합상담소를 통한 초기단계 대응과 함께 전문상담시설을 통한 상담·보호가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이 포함됨.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청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 지역으로 주요 인프라가 도심에 집중하고 있으며 군단위 시설의 인프라는 취약함. 보은, 옥천, 증평, 괴산, 단양 지역의 경우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모두 부재한 지역임.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해보임.

〈표 Ⅱ-4-3〉 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지원 시설

(단위 : 개소 수)

구분		갯수
통합상담소		청주(3) [10]
가정폭력	상담	청주(1), 충주(1), 제천(1), 음성(1), 영동(1)
	보호	청주(1), 충주(1), 제천(1), 진천(1)
성폭력상담소		청주(2), 충주(1), 제천(1)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1)
성매매	상담	청주(1)
	보호	청주(1)
이주여성	상담	청주(1)
	보호	청주(1)

주 : 단양(심리상담소 1개소 운영 중)

10)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제외

5. 데이트폭력에 관한 국외 제도·정책

1) 영국

○ 영국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정의는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구성원이 16세 이상의 사람을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통제하거나(controling), 강요하거나(coercive), 위협하거나(threatening), 폭력을 가하거나(violence), 학대하는(abuse)행위로 포함하고 있음. 즉, 심리적,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16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영국의 데이트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정책은 2014년부터 실시한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DVDS)임. 이는 일명 「클레어법」 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클레어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음. 당시 가해자인 남성이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한 전과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데이트 상대의 폭력전과 정보를 공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제도임.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의 새로운 연인에게 전과정보를 제공하여, 그러한 관계의 지속여부를 잠재적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추진된 정책임.

2) 미국

○ 미국에서 데이트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뤄짐.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 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가정 내 폭력(domestic violence)을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제·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민·형사상의 전략을 재정비하는 내용들을 규정하였는데 점차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성소수자 및 남성 피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었음.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조치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행 법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경찰에 의한 적극적 체포(pro-arrest policy)와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임.

○ 197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그러나 '체포, 구속이 다른 처우방식보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유의미하게 억제시킨다'는 미네아폴리스 실험연구결과에 힘입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체포(pro-arrest policy)가 널리 확산되었음.

○ 보호명령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제를 전제로 고안된 제도이지만, 오늘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음.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의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조하고 자해자에 의한 폭행, 학대, 상해, 스토킹,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금지 기타의 명령을 의미함. 법원은 가해자에게 특정인 혹은 그의 주거지, 직장 또는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메모,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꽃이나 선물배달과 같은 모든 유형의 연락을 금지할 수도 있음. 보호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법원의 보호명령은 최대 5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

3) 독일

○ 독일은 데이트폭력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력 및 스토킹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이하 폭력보호법이라 함)은 "가해자는 떠나야하고, 피해자가 집에 머문다"는 원칙하에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법의 내용에는 1)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2)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하겠다고 위법하게 협박한 경우, 3) 타인의 주거, 소유지에 대한 침입이나 스토킹 행위 또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기해 새로운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법은 단기간의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음.

Ⅲ.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CBWF

1.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427명(61%), 남성은 273명(39%)이었음. 연령은 20대~4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371명(53%)이고 고졸이하가 181명(25.9%)으로 뒤를 잇고 있음. 미혼인 경우가 486명(69.4%)이며 이혼의 경우도 121명(17.3%) 포함되었음. 가족유형은 부모와 본인 또는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2.9%로 가장 높았음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이 244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이 208명(29.9%)임.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N	%	구분		N	%
성별	여성	427	61.0	데이트상대	데이트상대있음	336	48.0
	남성	273	39.0		현재없음(과거有)	364	52.0
연령	20대	185	26.4	가족	부(모)+조부모+본인(형제자매)	79	12.2
	30대	186	26.6		부모+본인(형제자매)	213	32.9
	40대	165	23.6		부(모)+본인or본인+자녀	101	15.6
	50대	100	14.3		본인+친구or형제자매or친인척	135	20.8
	60대	64	9.1		조부(조모)+본인(형제자매)	45	6.9
학력	고졸이하	181	25.9		혼자생활	75	11.6
	대학재학중	89	12.7		무응답	52	-
	대졸	371	53.0	소득수준	없음	76	10.9
	대학원이상	59	8.4		100만원 미만	66	9.5
비혼상태	이혼	121	17.3		100-200 미만	208	29.9
	사별	41	5.9		200-300 미만	244	35.1
	사실혼	46	6.6		300-400 미만	55	7.9
	미혼	486	69.4		400만원 이상	46	6.6
	기타	6	.9		무응답	5	-

주 : n=700

2) 가정 및 사회에서 성역할 태도

○ 가정 및 사회에서 성역할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함. 전체 평균은 2.26점으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간수준 이하를 보임.

- 성별로는 여성 2.12점, 남성 2.48점으로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 남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항목이었음(t=5.8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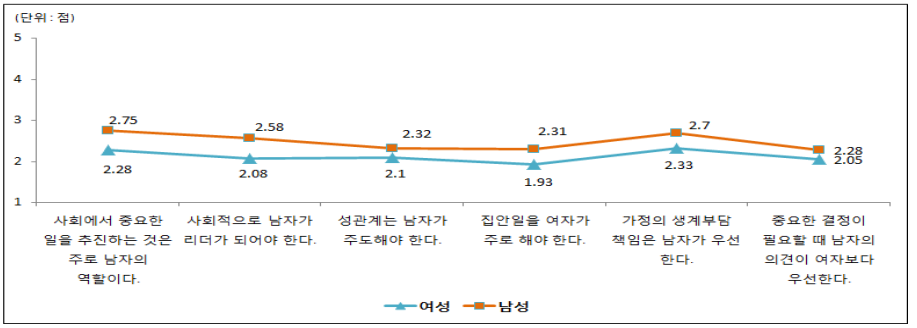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정의 생계부담 책임은 남자가 우선한다'(여성 2.33, 남성 2.70)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았고'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여성 2.28, 남성 2.75)항목이 다음으로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임.

<표 Ⅲ-1-2>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단위 : 점)

문항	전체 (n=700)	여성 (n=427)	남성 (n=273)	t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46	2.28	2.75	5.2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27	2.08	2.58	5.80***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18	2.10	2.32	2.55**
집안일을 여자가 주로 해야 한다.	2.07	1.93	2.31	4.43***
가정의 생계부담 책임은 남자가 우선 한다.	2..47	2.33	2.70	4.18***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남자의 의견이 여자보다 우선한다.	2.13	2.05	2.28	2.75**
전체	2.26	2.12	2.48	4.905***

주 : **p<.01, ***p<.001



〈그림 Ⅲ-1-1〉 성역할태도

-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음. 20대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60대 이상의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성역할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1-3〉 연령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단위 : 점)

문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10 a	2.40 ab	2.46 ab	2.74 b	3.28 c
F	15.93*** a<ab<b<c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1.83 a	2.13 ab	2.30 bc	2.63 c	3.31 d
F	29.03*** a<ab<bc<c<d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79 a	2.10 a	2.14 ab	2.49 b	3.22 c
F	28.44*** a<ab<b<c				
집안일을 여자가 주로 해야 한다.	1.73 a	1.90 a	1.99 a	2.43 b	3.30 c
F	35.64*** a<b<c				
가정의 생계부담 책임은 남자가 우선 한다.	2.12 a	2.39 ab	2.46 ab	2.69 ab	3.42 c
F	18.78*** a<ab<c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남자의 의견이 여자보다 우선한다.	1.76 a	2.05 a	2.13 ab	2.47 b	2.98 c
F	21.61*** a<ab<b<c				

주 : ***p<.001

3) 폭력허용도

○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4점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임을 의미함.

- 남성이 평균 1.50, 여성이 평균 1.58점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Ⅲ-1-4> 성별에 따른 폭력허용도의 차이

(단위 : 명, 점)

변인	전체		여성		남성	
	N	평균	N	평균	N	평균
폭력허용도	700	1.55	427	1.58	273	1.50
t	-1.683					

주 : 평균4점 기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임을 의미 1=절대 그럴 수 없다, 2=그럴 수 없다, 3=그럴 수 있다, 4=매우 그럴 수있다

- 앞서 살펴본 폭력허용도가 중간 수준 이하로 실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데이트폭력 경험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표 Ⅲ-1-5> 데이트폭력경험과 폭력허용도

(단위 : 명, 점)

	데이트폭력여부	N	평균	t
폭력허용도	없다	171	1.45	-2.492**
	있다	529	1.58	

-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60대 집단의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F=12.519, p<.001). 이는 앞서 살펴본 성역할 태도에서 60대에서 드러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폭력허용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

〈표 Ⅲ-1-6〉 연령에 따른 폭력허용도의 차이

(단위 : 점)

문항	20대 (n=185)	30대 (n=186)	40대 (n=165)	50대 (n=100)	60대 (n-64)
폭력허용도	1.42 a	1.55 a	1.48 a	1.61 a	2.01 b
F			12.519***		

주 : ***p〈.001, a〈b

4) 폭력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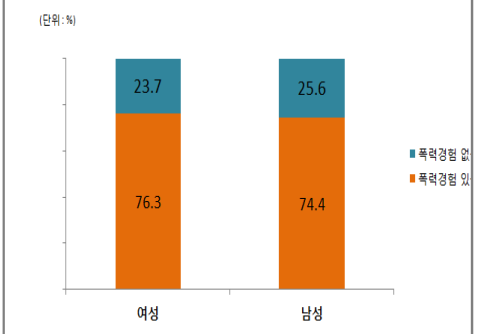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의 범위는 통제, 언어·정서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것으로 한번이라도 데이트상대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529명으로 75.6%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여성은 326명(76.3%), 남성은 203명(74.4%)가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Ⅲ-1-7〉 성별 폭력경험

(단위 : 명, %)

	전체		여성		남성	
	N	%	N	%	N	%
있음	529	75.6	326	76.3	203	74.4
없음	171	24.4	101	23.7	70	25.6
전체	700	100	427	100	273	100

주 : 전체 n=700



〈그림 Ⅲ-1-2〉 폭력경험

○ 유형별 폭력경험은 통제경험이 62.9%으로 가장 높고 언어정서폭력 40.7%, 성폭력 35%, 신체폭력이 27.4%의 경험률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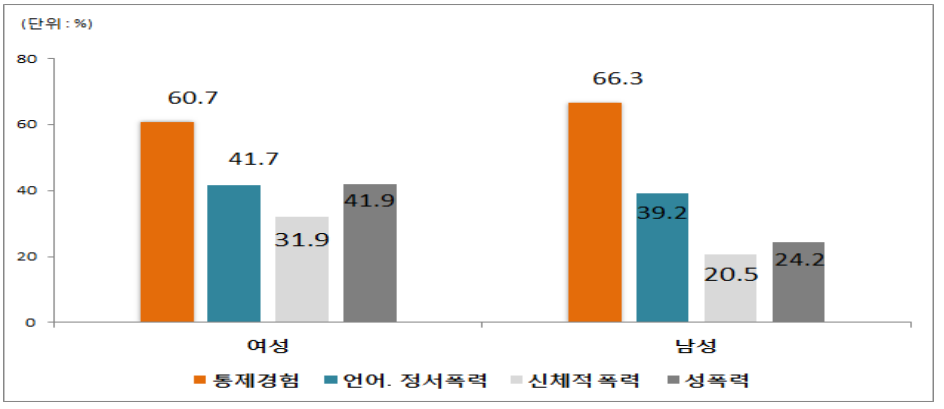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여성의 폭력경험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의 경우 전체 참여자 중 통제경험자의 비율이 66.3%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았음.

〈표 Ⅲ-1-8〉 유형별 폭력경험

(단위 : 명, %)

	전체(n=700)		여성(n=427)		남성(n=273)	
	N	%	N	%	N	%
통제경험	440	62.9	259	60.7	181	66.3
언어·정서폭력	285	40.7	178	41.7	107	39.2
신체폭력	192	27.4	136	31.9	56	20.5
성폭력	245	35.0	179	41.9	66	24.2

주 : 전체 n=700



〈그림 Ⅲ-1-3〉 유형별 폭력경험

○ 연령에 따라 경험되는 폭력유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음.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통제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 언어·정서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폭력경험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감안하면 통제경험이 다른 유형과 함께 빈번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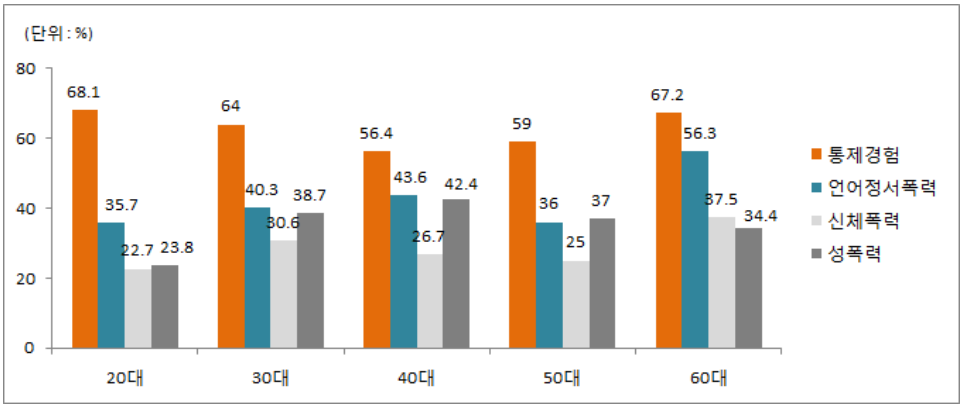
○ 통제경험은 20대에서 가장 높고(68.1%), 언어·정서폭력 경험과 신체폭력 경험은 60대에서 각각56.3%,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경험은 40대 연령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표 Ⅲ-1-9〉 연령별 폭력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N	%	N	%	N	%	N	%	N	%
통제경험	440	126	68.1	119	64.0	93	56.4	59	59.0	43	67.2
언어·정서 폭력	285	66	35.7	75	40.3	72	43.6	36	36.0	36	56.3
신체폭력	192	42	22.7	57	30.6	44	26.7	25	25.0	24	37.5
성폭력	245	44	23.8	72	38.7	70	42.4	37	37.0	22	34.4

주 : 전체 n=700, 20대 n=185, 30대 n=185, 40대 n=165, 50대 n=100, 60대 n=64



〈그림 Ⅲ-1-4〉 연령별·유형별 폭력경험

(1) 통제경험

○ 통제경험의 문항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음. 여성의 49.9%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나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라는 응답이 40.3%로 뒤를 이었음. 남성의 경우는 '내가 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고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했다'라는 응답이 34.4%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험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도 모든 유형에서 2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통제경험이 남녀 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성별에 따른 gap이 가장 큰 문항은 '나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가 9.5%p,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가 6.2%p차이를 보였음.

〈표 Ⅲ-1-10〉 성별 통제경험

(단위: 명, %)

항목	전체 (n=700)		여성(A) (n=427)		남성(B) (n=273)		GAP (A-B)
	N	%	N	%	N	%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341	48.7	213	49.9	128	46.9	3
나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256	36.6	172	40.3	84	30.8	9.5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했다	263	37.6	169	39.6	94	34.4	5.2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216	30.9	142	33.3	74	27.1	6.2
내 휴대폰, e-mail, SNS 등을 자주 점검했다	169	24.1	101	23.7	69	24.9	-1.2
써클이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169	24.1	110	25.8	59	21.6	4.2
내가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205	29.3	125	29.3	80	29.3	0
나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163	23.3	101	23.7	62	22.7	1

주 : 폭력경험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제시하였음.

- 연령별 통제경험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의 집단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다

음 30대의 경험률도 높게 나타났음. 사람을 만나는 외부활동에 대한 통제는 6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뒤를 잇고 있음.

<표 Ⅲ-1-11> 연령별 통제경험

(단위: %)

항목	N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341	48.6	54.3	44.8	37.0	60.9
나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256	32.4	41.4	32.1	32.0	53.1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했다.	263	35.1	40.9	28.5	39.0	56.3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216	27.6	33.3	27.9	28.0	45.3
내 휴대폰, e-mail, SNS 등을 자주 점검했다.	169	23.8	31.2	17.6	21.0	26.6
써클이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169	16.8	26.9	21.8	27.0	39.1
내가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205	22.7	29.6	27.3	34.0	46.3
나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163	16.2	22.0	22.4	28.0	42.2

주 : 폭력경험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20대n=185, 30대n=185, 40대n=165, 50대n=100, 60대n=64

(2) 언어·정서폭력 경험

○ 언어·정서 폭력의 문항별 세부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는 응답이 각각 30.4%, 21.2%로 가장 높았음. 다음 순위는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의 비율이 각각 여성 25.8%, 남성 19.4%로 나타났음.

- 남성과 여성의 경험의 차이는 모든 유형에서 여성의 폭력경험이 높지만 특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 찬 말을 했다'와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음담패설을 했다'의 경우 각각 12.9%, 12.1%, 9.6%로 남성과 여성의 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1-12> 성별 언어·정서폭력 경험

(단위: 명, %)

항목	전체 (n=700)		여성(A) (n=427)		남성(B) (n=273)		GAP (A-B)
	N	%	N	%	N	%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163	23.3	110	25.8	53	19.4	6.4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150	21.4	105	24.6	45	16.5	8.1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188	26.9	130	30.4	58	21.2	9.2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했다	127	18.1	99	23.2	28	10.3	12.9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을 했다	124	17.7	94	22.0	30	11.0	11
화가 날 때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	151	21.6	105	24.6	46	16.8	7.8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 했다	95	13.6	78	18.3	17	6.2	12.1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했다	61	8.7	46	10.8	15	5.5	5.3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70	10	53	12.4	17	6.2	6.2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 등을 가져갔다	46	6.6	37	8.7	9	3.3	5.4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했다	82	11.7	66	15.5	16	5.9	9.6

주 :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 언어·정서 폭력의 연령별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60대의 경우가 모든 문항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음. 문항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Ⅲ-1-13> 연령별 언어·정서 폭력 경험

(단위: %)

항목	N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163	20.0	24.2	23.0	15.0	43.8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150	18.9	20.4	19.4	20.0	39.1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188	22.2	27.4	26.7	24.0	43.8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했다	127	14.1	16.7	18.8	15.0	37.5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을 했다	124	14.6	16.1	15.8	17.0	37.5
화가 날 때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	151	13.5	24.2	23.6	22.0	31.3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 했다	95	10.8	12.4	13.3	11.0	29.7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했다	61	7.0	7.0	9.1	1.0	25.0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70	7.0	7.0	10.3	7.0	31.3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 등을 가져갔다	46	2.7	4.8	6.7	5.0	25.0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했다	82	8.6	9.7	11.5	12.0	26.6

주 :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20대n=185, 30대n=185, 40대n=165, 50대n=100, 60대n=64

(3) 신체폭력 경험

○ 신체 폭력 경험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항은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였음(22.1%). 전반적으로 여성의 신체폭력 경험이 남성보다 모든 문항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의 11.7%는'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주목할 것은 목을 조르거나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는 등의 심각한 폭력 피해는 여성이 남성 비율보다 모두 높다는 점임.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신체폭력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의 폭력피해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킴.

<표 Ⅲ-1-14> 신체폭력 경험

(단위: 명, %)

항목	전체 (n=700)		여성(A) (n=427)		남성(B) (n=273)		GAP (A-B)
	N	%	N	%	N	%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55	22.1	128	30.0	27	9.9	20.1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05	15.0	83	19.4	22	8.1	11.3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70	10.0	55	12.9	15	5.5	7.4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삐거나 멍이 든 적 있다	67	9.6	45	10.5	22	8.1	2.4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61	8.7	41	9.6	20	7.3	2.3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74	10.6	42	9.8	32	11.7	-1.9
위험한 물건을 나에게 집어던진 적이 있다	62	8.9	43	10.1	19	7.0	3.1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32	4.6	26	6.1	6	2.2	3.9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43	6.1	32	7.5	11	4.0	3.5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진 적 있다	21	3.0	17	4.0	4	1.5	2.5
상대의 폭행으로 기절한 적 있다	22	3.1	16	3.7	6	2.2	1.5

주 :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 연령에 따른 신체폭력 경험은 60대 집단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노년집단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표 Ⅲ-1-15> 연령에 따른 신체폭력

(단위: %)

항목	N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55	20.5	24.2	18.2	20.0	34.4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05	9.7	14.5	15.2	15.0	31.3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70	6.5	7.5	9.1	11.0	28.1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삐거나 멍이 든 적 있다	67	6.5	8.6	10.9	6.0	23.4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61	7.0	7.5	7.9	7.0	21.9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74	7.6	10.8	9.1	9.0	25.0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던진 적이 있다	62	4.9	9.1	8.5	7.0	23.4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32	1.6	3.8	6.7	2.0	14.1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43	3.8	4.8	7.3	4.0	17.2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진 적 있다	21	1.6	1.6	3.6	2.0	10.9
상대의 폭행으로 기절한 적 있다	22	1.1	1.6	4.8	2.0	10.9

주 : 폭력경험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20대 n=185, 30대 n=185, 40대 n=165, 50대 n=100, 60대 n=64

(4) 성폭력 경험

○ 성폭력 경험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험률이 높았음. 여성의 경우 경험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가 34.4%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 있다는 응답이 16.5%로 가장 높았음.

- 남성과 여성의 경험률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가 20.1%p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 있다'가 19.7%p로 여성들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표 Ⅲ-1-16〉 성폭력 경험

(단위: 명, %)

항목	전체 (n=700)		여성(A) (n=427)		남성(B) (n=273)		GAP (A-B)
	N	%	N	%	N	%	
내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 있다	175	25.1	130	30.7	45	16.5	14.2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 있다	185	26.5	146	34.4	39	14.3	20.1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 있다	168	24.1	135	31.8	33	12.1	19.7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적 있다	29	4.2	23	5.4	6	2.2	3.2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강요한 적 있다	10	1.4	8	1.9	2	0.7	1.2
강제로 섹스를 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한 적 있다	10	1.4	8	1.9	2	0.7	1.2

주 : 폭력경험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 연령에 따른 성폭력 경험은 20대와 60대의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0대, 40대, 50대의 경우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표 Ⅲ-1-17〉 연령에 따른 성폭력

(단위: %)

항목	N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내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 있다	175	17.3	24.3	30.9	30.6	26.6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 있다	185	14.6	24.9	37.6	31.6	29.7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 있다	168	18.4	22.2	28.5	24.5	34.4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적 있다	29	2.7	1.6	6.1	4.1	10.9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강요한 적 있다	10	5.9	13.0	10.3	5.1	21.9
강제로 섹스를 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한 적 있다	10	0.5	1.1	1.2	0.0	7.8

주 : 폭력경험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음. 20대 n=185, 30대 n=185, 40대 n=165, 50대 n=100, 60대 n=64

○ 폭력 유형별 폭력행위가 처음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별로 폭력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선택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폭력 행위가 처음 발생한 시기를 기억하는 경우에는 사귄 후 6개월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사귄 후 1년 이내에 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목해야할 것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난 후, 혹은 헤어지고 난 후의 신체 폭력발생 문제로 스토킹 가능성을 야기하는 부분임(14%). 즉, 상대방의 이별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폭력방식으로 관계회복을 종용하거나 복수하는 형태의 폭력이 여기에 해당됨. 특히 신체폭력이 두드러지는 점은 스토킹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Ⅲ-1-18〉 폭력발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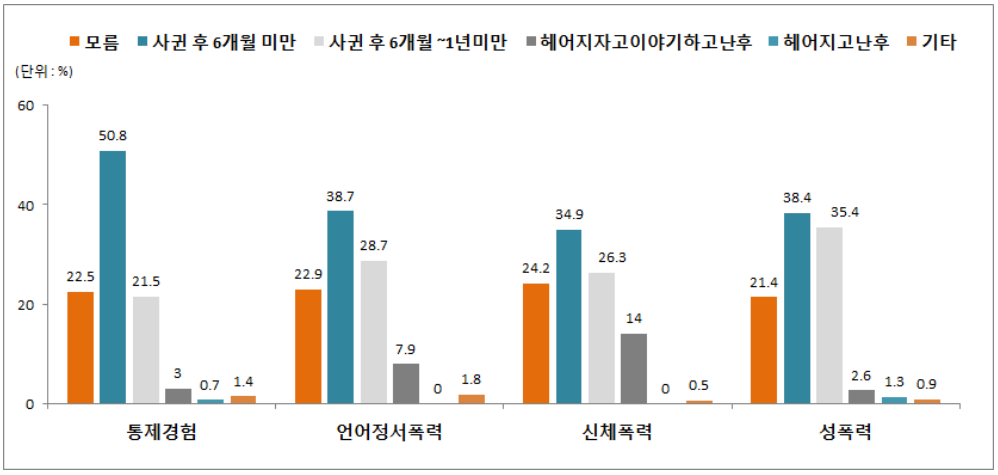
(단위: 명, %)

	통제경험		언어정서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N	%	N	%	N	%	N	%
모름	96	22.5	64	22.9	45	24.2	49	21.4
사귄 후 6개월 미만	217	50.8	108	38.7	65	34.9	88	38.4
사귄 후 6개월 ~1년미만	92	21.5	80	28.7	49	26.3	81	35.4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난후	13	3.0	22	7.9	26	14.0	6	2.6
헤어지고난후	3	0.7	-	-	-	-	3	1.3
기타	6	1.4	5	1.8	1	.5	2	.9
전체	427	100	279	100	192	100	229	100

주 : 결측제외. 통제경험 n=440, 언어 · 정서폭력 n=285, 신체폭력 n=192, 성폭력 n=245

○ 폭력이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은 통제경험, 언어·정서폭력 경험, 신체폭력경험 모두 일상적인 의견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폭력의 경우에는 '데이트상대의 주취상태'가 68명(28.1%)으로 나타났음. 아울

러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통제경험 24.4%, 성폭력 23.6%) 이는 폭력행위가 습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폭력 행위자에 대한 행위 교정 필요성을 대두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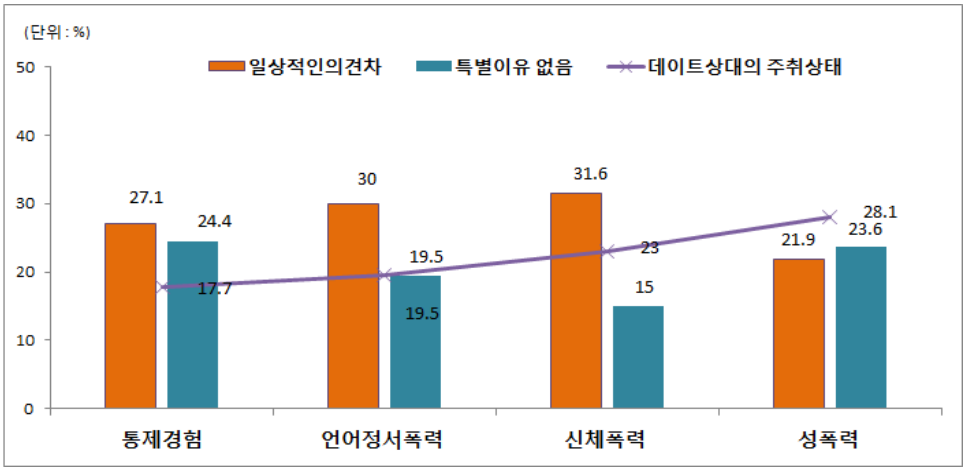
〈그림Ⅲ-1-5〉 폭력발생시기

〈표 Ⅲ-1-19〉 폭력발생 주요 요인

(단위: 명, %)

항목 / 변인	통제경험		언어정서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N	%	N	%	N	%	N	%
일상적인의견차	111	27.1	83	30.0	59	31.6	53	21.9
중대한 의견차	42	10.3	25	9.0	13	7.0	18	7.4
특별이유 없음	100	24.4	54	19.5	28	15.0	57	23.6
데이트상대의 주취상태	71	17.7	54	19.5	43	23.0	68	28.1
나의 주취상태	29	7.1	23	8.3	14	7.5	18	7.4
서로에 대한 평가 시	19	4.6	14	5.1	7	3.7	9	3.7
이별통보	27	6.6	19	6.9	20	10.7	15	6.2
기타	10	2.4	5	1.8	3	1.6	4	1.7
전체	409	100	277	100	187	100	242	100

주 : 결측제외. 통제경험 n=440, 언어 · 정서폭력 n=285, 신체폭력 n=192, 성폭력 n=245



〈그림Ⅲ-1-6〉 폭력발생 요인

○ 데이트폭력 장소는 '본인 혹은 상대의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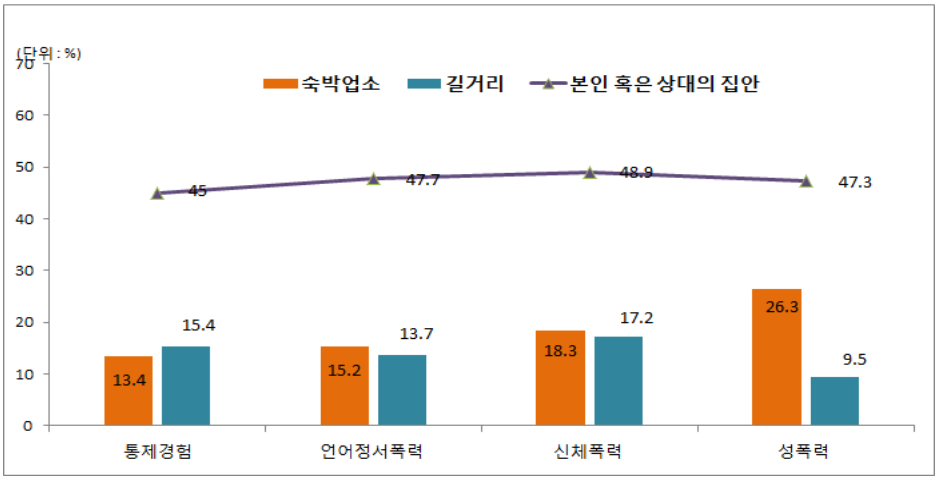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자칫 사적인 공간에서의 문제로 치부되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기 쉬운 조건이 될 수 있음.

〈표 Ⅲ-1-20〉 폭력발생 장소

(단위: 명, %)

	통제경험		언어정서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N	%	N	%	N	%	N	%
학교	13	3.2	12	4.3	10	5.4	6	2.5
직장	7	1.7	6	2.2	2	1.1	6	2.5
본인 혹은 상대의 집안	184	45.0	132	47.7	91	48.9	115	47.3
숙박업소	55	13.4	42	15.2	34	18.3	64	26.3
길거리	63	15.4	38	13.7	32	17.2	23	9.5
음식점	29	7.1	19	6.9	9	4.8	13	5.3
기타	58	14.2	28	10.1	8	4.3	16	6.6
전체	409	100	277	100	186	100	243	100

주 : 결측제외. 통제경험 n=440, 언어 · 정서폭력 n=285, 신체폭력 n=192, 성폭력 n=245



〈그림 Ⅲ-1-7〉 폭력발생 장소

○ 폭력발생시 현장 대응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통제경험, 언어정서 폭력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경우에는'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라는 응답이 높았음.

-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통제경험이나 언어정서폭력에 비해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5% 이내이며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은 1% 범위 내에 있음. 본 문항이 중복응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드러나는 데이트폭력 수치보다 드러나지 않는 데이트폭력의 실체가 더욱 심각함을 시사하는 부분임.

<표 Ⅲ-1-21> 폭력발생시 현장 대응(다중응답)

(단위: 명, %)

	통제경험		언어·정서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N	%	N	%	N	%	N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0	28.1	119	23.8	63	16.5	93	21.0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하였다	103	15.2	82	16.4	6	16.5	81	18.3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146	21.6	99	19.8	85	22.3	100	22.6
맞서서 대응했다	78	11.5	65	13.0	54	14.1	56	12.6
헤어지자고 했다	90	13.3	72	14.4	59	15.4	61	13.8
경찰에 신고했다	19	2.8	19	3.8	17	4.5	15	3.4
친구,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9	4.3	24	4.8	25	6.5	21	4.7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7	1.0	11	2.2	10	2.6	9	2.0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5	0.7	5	1.0	3	0.8	5	1.1
기타	9	1.3	5	1.0	3	0.8	2	0.5
전체	676	100	501	100	382	100	443	100

주 : 결측제외

○ 성별에 따라서는 현장대응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음. 여성과 남성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응답이 뒤를 잇고 있음.

-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하였다'는 응답이 29.3%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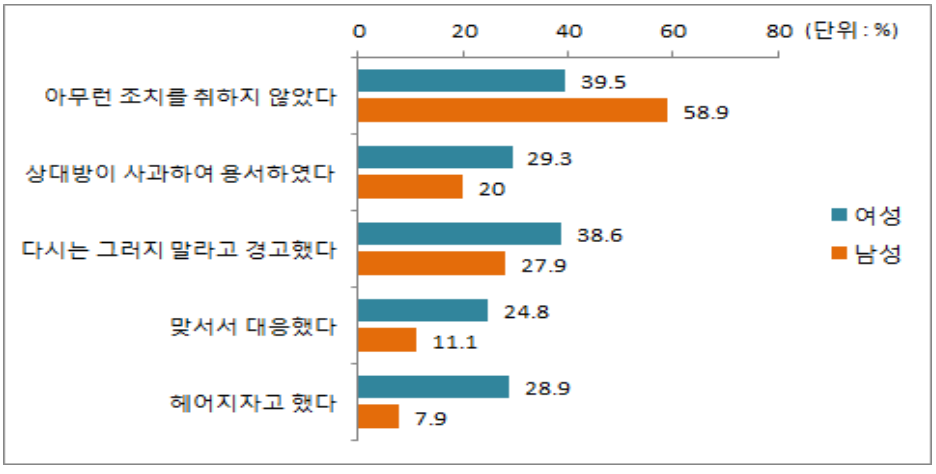
-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리는 등의 행위는 각각 6%, 2% 범위로 피해자들이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표 Ⅲ-1-22〉 성별 폭력발생시 현장대응(중복응답)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N	%	N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35	123	39.5	112	58.9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하였다	129	91	29.3	38	20.0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173	120	38.6	53	27.9
맞서서 대응했다	98	77	24.8	21	11.1
헤어지자고 했다	105	90	28.9	15	7.9
경찰에 신고했다	26	15	4.8	11	5.8
친구,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33	27	8.7	6	3.2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2	8	2.6	4	2.1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6	5	1.6	1	0.5
기타	11	4	1.3	7	3.7
전체	501	311	100	190	100

주 : n=529, 결측제외



〈그림 Ⅲ-1-8〉 폭력발생시 현장 대응(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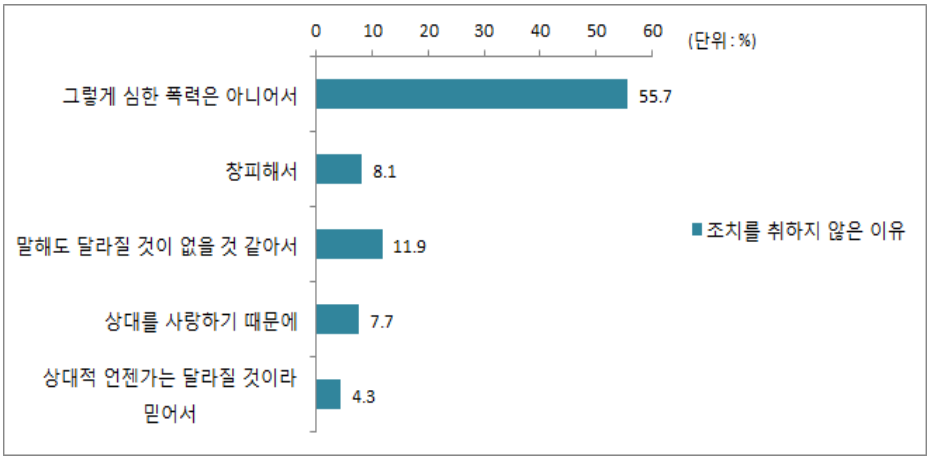
○ 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가 5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11.9%, '창피해서' 8.1%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Ⅲ-1-2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항목	N	%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	131	55.7
창피해서	19	8.1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28	11.9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18	7.7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싫어서	6	2.6
주변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6	2.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8	3.4
상대적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 믿어서	10	4.3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2	.9
기타	7	3.0
전체	235	100

주 : 결측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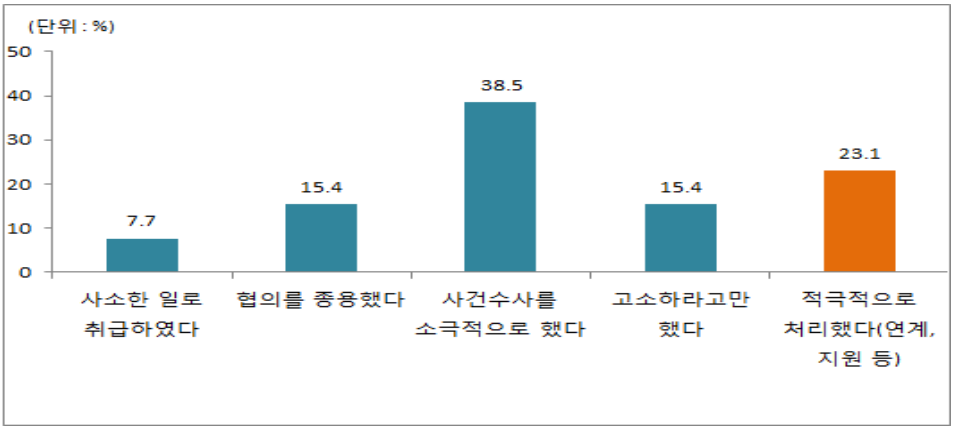
〈그림 Ⅲ-1-9〉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5순위)

○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의 신고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적극적으로 처리했다'가 23.1%로 나타났음. '사건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응답이 38.5%, '협의를 종용했다' '고소하라고만 했다'라는 응답이 각각 15.4% 수준을 보이는 점은 향후 경찰개입이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함을 시사함.

〈표 Ⅲ-1-24〉 경찰의 대응 방식

(단위: 명, %)

항목	N	%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	2	7.7
협의를 종용했다	4	15.4
사건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10	38.5
고소하라고만 했다	4	15.4
적극적으로 처리했다(연계, 지원 등)	6	23.1
전체	26	100



〈그림 Ⅲ-1-10〉 경찰의 대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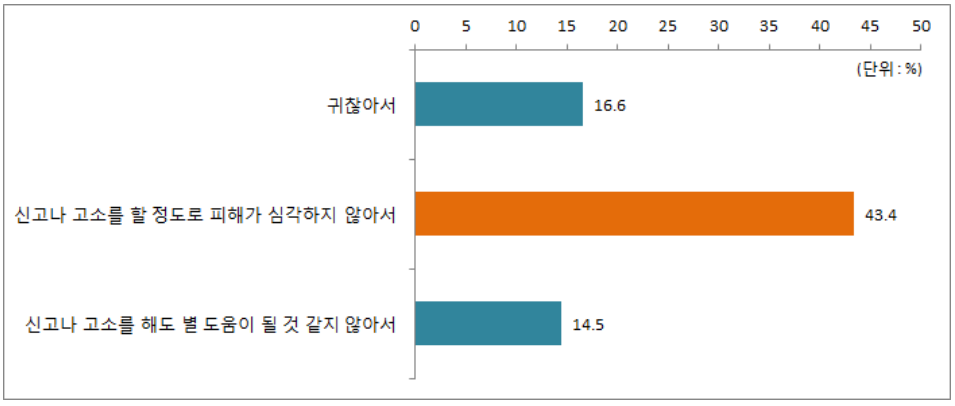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4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귀찮아서'16.6%,

‘신고나 고소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4.5%, ‘수치심 또는 창피해서’ 7.4% 순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기타 의견으로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와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기타의견들이 있었음.

〈표 Ⅲ-1-25〉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항목	N	%
귀찮아서	78	16.6
신고/고소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17	3.6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04	43.4
신고나 고소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68	14.5
수치심 또는 창피해서	35	7.4
증거가 없어서	12	2.6
상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32	6.8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두려워서	5	1.1
보복이 두려워서	3	.6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1	.2
기타	15	3.2
전체	470	100



〈그림 Ⅲ-1-11〉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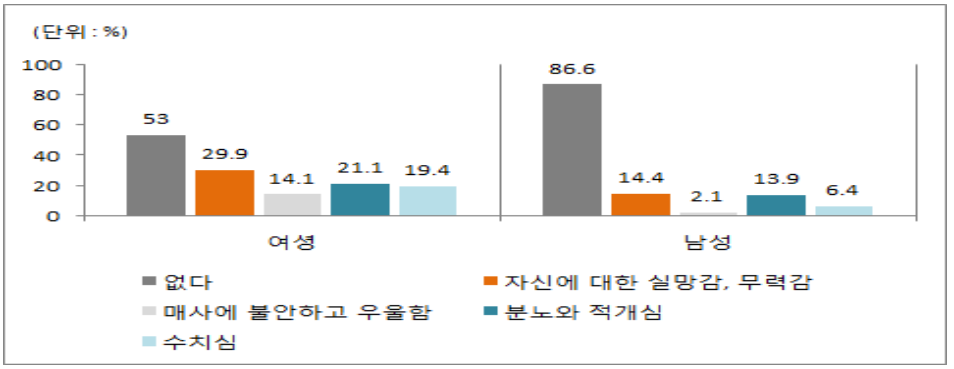
○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 이후 경험한 심리적 증상의 다중응답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53.0%, 남성의 86.6%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즉, 여성의 경우 47%, 남성의 13.4%에서 심리적 증상이 발현한다고 볼 수 있음.

- 주목할 것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며 특히 '분노와 적개심', '수치심'은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임.

〈표 Ⅲ-1-26〉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다중응답)

(단위: 명, %)

항목	전체	여성		남성	
		N	%	N	%
없다	323	161	53.0	162	86.6
죽고 싶다는 생각	17	15	4.9	2	1.1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118	91	29.9	27	14.4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함	47	43	14.1	4	2.1
데이트상대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19	17	5.6	2	1.1
데이트상대를 죽이고 싶은 생각	14	14	4.6	3	1.6
분노와 적개심	90	64	21.1	26	13.9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림	13	10	3.3	3	1.6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10	8	2.6	2	1.1
수치심	71	59	19.4	12	6.4
기타	9	7	2.3	2	1.1
전체	491	304	100	187	100



〈그림 Ⅲ-1-12〉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5순위)

○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86.7%, 남성의 94.7%가 신체적 증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즉, 여성의 13.3%, 남성의 5.1%가 신체적 증상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음.

- 두 집단 모두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찢어지는 찰과상' 순이었음. 주목할 것은 여성의 경우는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의 온몸 타박상', '중절수술' 비율이 높지 않지만 나타나는 반면 남성은 심각한 수준의 상해는 없다는 점임. 이는 폭력발생시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해의 정도가 남성에 비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Ⅲ-1-27>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N	%	N	%
없음	427	261	86.7	166	94.9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116	84	27.9	32	18.3
찢어지는 찰과상	28	22	7.3	6	3.4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1	1	0.3	0	0.0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 온몸 타박상	2	2	0.7	0	0.0
중절수술	5	5	1.7	0	0.0
만성통증	21	16	5.3	5	2.9
기타	7	6	2.0	1	0.6
전체	476	301	100	175	100

○ 데이트 폭력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86.8%로 대부분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1-28>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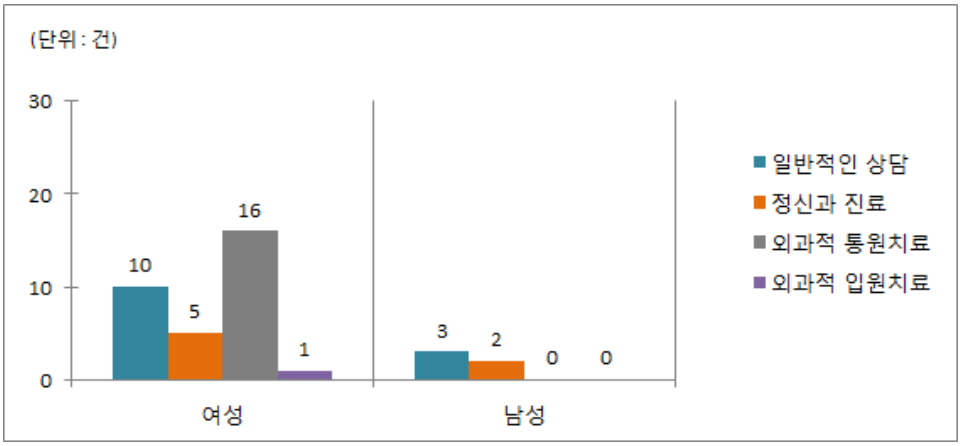
	전체		여성		남성	
	N	%	N	%	N	%
있음	37	13.2	32	15.8	5	6.5
없음	243	86.8	171	84.2	72	93.5
전체	280	100	203	100	77	100

○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음. 그 결과, '외과적 통원치료'가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적 상담'이 35.1%, '정신과 진료'가 18.9%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Ⅲ-1-29〉 치료경험

(단위: 명)

	전체	여성	남성
일반적인 상담	13	10	3
정신과 진료	7	5	2
외과적 통원치료	16	16	0
외과적 입원치료	1	1	0
전체	37	32	5



〈그림 Ⅲ-1-13〉 치료경험

○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녀 공통으로'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이 신체적 상해와 같은 본인 위해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꺼리거나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Ⅲ-1-30>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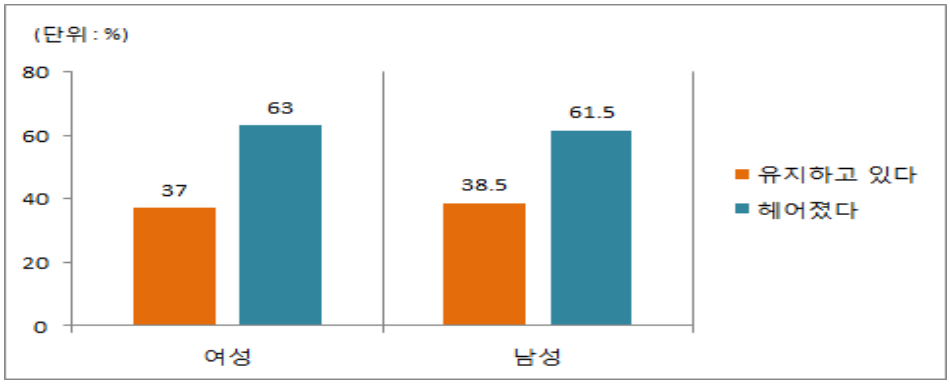
	전체		여성		남성	
	N	%	N	%	N	%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110	45.3	77	45.0	33	45.8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96	39.5	67	39.2	29	40.3
돈이 없어서	4	1.6	3	1.8	1	1.4
폭력이 알려질까봐 창피해서	21	8.6	16	9.4	5	6.9
데이트상대가 가지 못하게 해서	6	2.5	4	2.3	2	2.8
기타	6	2.5	4	2.3	2	2.8
전체	243	100	171	100	72	100

○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상대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헤어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2.4%로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음. 한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평균 37.6%로 여전히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표 Ⅲ-1-31> 폭력이 있었던 상대와의 관계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N	%	N	%	N	%
유지하고 있다	183	37.6	111	37.0	72	38.5
헤어졌다	304	62.4	189	63.0	115	61.5
전체	487	100.0	300	100	187	100



〈그림 Ⅲ-1-14〉 폭력이 있던 상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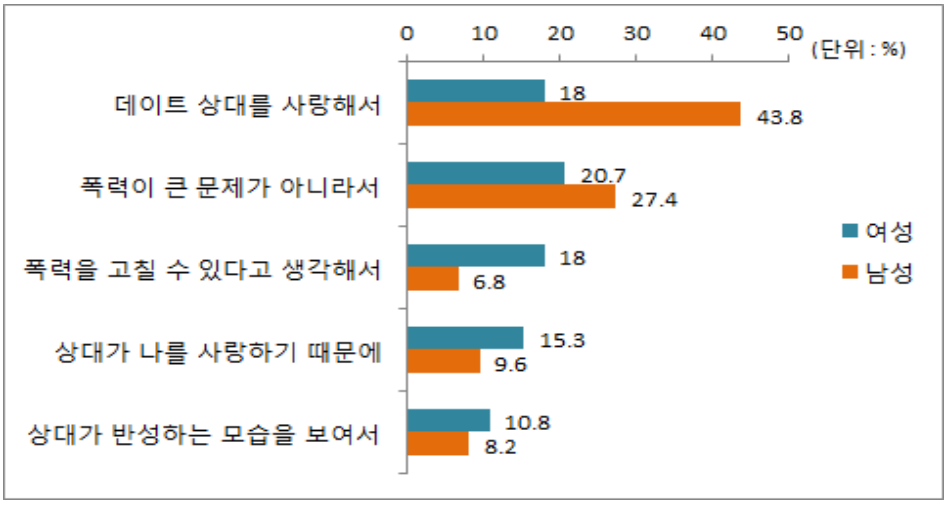
○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 28.3%가 '데이트 상대를 사랑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서'가 24.3%로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여성의 경우 '폭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8%,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15.3%로 남성이 데이트상대를 사랑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응답(43.8%)과 대조를 보임.

〈표 Ⅲ-1-32〉 폭력이 있었던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N	%	N	%	N	%
데이트 상대를 사랑해서	52	28.4	20	18.0	32	43.8
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서	43	23.5	23	20.7	20	27.4
폭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5	13.7	20	18.0	5	6.8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2	1.1	2	1.8	0	0.0
결혼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3	1.6	3	2.7	0	0.0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7	3.8	5	4.5	2	2.7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24	13.1	17	15.3	7	9.6
헤어진다고 얘기하기가 두려워서	3	1.6	3	2.7	0	0.0
상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18	9.8	12	10.8	6	8.2
기타	6	3.3	6	5.4	1	1.4
전체	183	100	111	100	73	100



〈그림 Ⅲ-1-15〉 폭력이 있던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5)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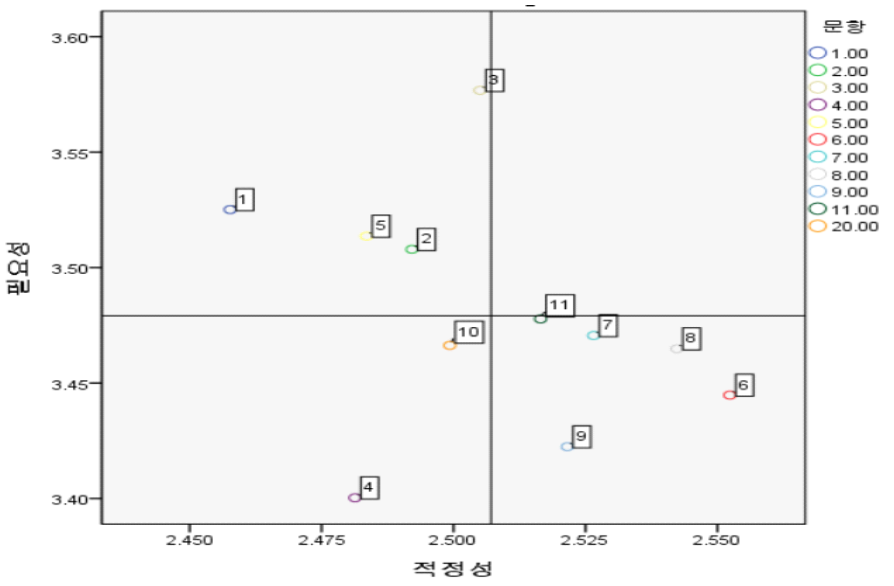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충북의 대응전략과제로서 우선순위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IPA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여기서 다루게 되는 정책과제들은 그 순위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가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4사분면의 과제가 낮은 필요성-높은 적정성 영역이라고 해서 정책 과잉영역으로서 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정책우선순위에서 체감이 낮다는 의미로 봐야 함.

- 1사분면의 경우 정책수요도 높고 현재 정책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영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2사분면의 경우 정책수요는 높지만 실제 정책이 적정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 3사분면의 경우 정책수요도 낮고 정책도 적정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영역이며 4사분면은 과잉영역으로 필요성에 대해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부분임.

〈표 Ⅲ-1-33〉 IPA 분석의 도식화

필요성	적정성 ←	→
높음 ↑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영역(Concentrate here) 높은 필요성-낮은 적정성	유지영역(Keep up the work) 높은 필요성-높은 적정성
	제3사분면	제4사분면
↓ 낮음	저순위영역(Low Priority) 낮은 필요성-낮은 적정성	과잉영역(Possible Overkill) 낮은 필요성 - 높은 적정성
	낮음	높음

○ 분석결과 제1사분면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데이트 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영역이 나타나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이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함을 시사함. 2사분면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규정’과 ‘경찰관의 응급조치’,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정책욕구에 비해 낮은 적정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임.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우선추진과제로 인식되는 영역으로 입법추진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음. 다음 3사분면과 4사분면 정책과제의 경우 정책필요도가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즉, 여기에 포함된 정책들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 차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데이트폭력 당사자들이 주로 자신들의 폭력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해 매우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Ⅲ-1-16〉 정책의 적정성· 필요성 IPA분석결과

○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체계의 기능의 명확히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3,4분면의 정책과제 역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영역임.

○ 정리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법안마련이 요구되는 지점이 발견되었고 그 외에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연계나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는 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수준이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데이트폭력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표 Ⅲ-1-34> 정책우선순위 보기

내용	①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규정 ② 경찰관의 응급조치(분리, 접근금지 등) ③ 피해자 신변보호 ④ 경찰대상 정기 직무교육 ⑤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⑥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상담소, 보호시설) 연계 강화 ⑦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⑧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⑨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⑩ 데이트폭력 관련 예방교육 확대 ⑪데이트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대중매체, 온라인, 캠페인 등)

2. 심층면접 결과

1) 심층인터뷰 개요

○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당사자의 실태와 욕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인터뷰에 참여한 당사자는 모두 4명으로 조사는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음. 당사자들은 모두 비혼인 자로 현재 데이트상대가 있거나 현재는 없으나 과거에(1년 전) 있었던 사람 중 데이트 상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구성하였음. 심층인터뷰 내용은 당사자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데이트폭력 경험 인식, 폭력 행위 인식, 폭력 대처 인식, 행위자와의 관계해소 인식,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 인식에 관한 것이었음. 사례에 대한 경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통한 눈덩이 표집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음. 아울러 실무자 대상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인식,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인식에 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음. 현장실무자는 4명으로, 통합상담소 2곳과 성폭력시설과 가정폭력시설 실무자가 포함되었음.

<표 Ⅲ-2-1> 당사자 인터뷰 및 실무자 FGI 참여자 기본정보

당사자			실무자	
구분	폭력유형	비고	구분	실무유형
사례 1	폭행, 상해, 협박	직장인	실무자 A	통합상담소
사례 2	통제, 정서・언어폭력	직장인	실무자 B	통합상담소
사례 3	폭행, 상해, 협박	직장인	실무자 C	성폭력상담소
사례 4	폭행, 상해	학생	실무자 D	가정폭력상담소

2) 심층인터뷰 결과

(1) 당사자 인터뷰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당사자들의 폭력경험은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심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만났어요. 그게 사랑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그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4)

> 무섭기는 했지만 저한테 직접 피해를 준 게 아니라(맞거나 다친 게 아니라서) 폭력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고할 생각도 안 한거고. (사례 2).

○ **데이트폭력 경험 인식**

당사자들은 신체폭력에 앞서 상대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와 언어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했던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교제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체폭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로를 거치고 있었음.

> 옷 입고 나간 거 사진 찍어 보내라. 몇 시까지 집에 들어가라. 제 핸드폰 다 보고, 남자랑 한 거며 친구랑 한 거 카톡 다 보고. 만나면서 그런 일로 계속 싸움이 생기니까 나중에 제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주병을 들고 자기머리에 깨겠다고...그러더니 진짜 소주병을 깨더라구요 자기랑 헤어지면 죽는다고... 우리 집에 불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진짜 그럴까봐 겁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목을 조르기까지 했어요. (사례 4)

6개월 지나고부터 (폭력)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화가 나면 욕을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었는데.. 미안하다고 다신 욕 안하겠다고, 화나서 그랬다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그 때가 시초였구요. 그 이후로는 밀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맞아서 멍들고 그랬었거든요. (사례 2)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 본인의 폭력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성장기 가정폭력목격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드러냈음.

저희 아빠도 솔직히 엄마한테 폭력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때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랑이랑 폭력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때릴 수 있는.. (사례 2)

통제경험은 인터뷰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경험되고 있었으며 이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도 발견되었음.

상대가 누굴 만나는지 간섭하고 계속 연락하고 그런 거는 연인 사이에서 다 있는 일 아닌가요? 저도 그러는데... (사례 2,3,4)

연락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연락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미치는 거죠. 게임만 하냐고, 연락을 해야지. 자기는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고 형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엄청 다퉈요. 저는 이제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다 제 손바닥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연인사이에서 지켜야할 것들을 오히려 더 지키지 못하고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례 3)

○ **폭력행위 인식**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일시적인 감정갈등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행동통제나 폭력을 경험하면서 가해자의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순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평상시에는 너무 잘했어요(사례 1)

> 저의 옷차림이나 sns를 검색하고 그리고 화가 나서 저를 협박하고 때리는 것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그러면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제가 진짜 늦게까지 놀거나 전화를 잘 안 받거나 그래서 얘가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례 4)

폭력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논의되어왔던 점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

>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로. 넘어졌는데,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저를 밟았거든요. 거기서 밟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남자친구랑 저랑 떼어놔 주시면서 신고해드릴까요 물어봤었는데, 제가 안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날 싫어해서 때렸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때 생각은..그냥 얘가 화가 났구나. 화가 나서 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2)

○ **폭력대처 및 보호 인식**

피해자들은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

음. 이는 경찰신고 결과로 나타난 통계수치 이상으로 데이트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

> 수시로 협박은 있었지만 저한테 상처를 내거나 상해를 입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신고할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나중에 목을 졸리는 일이 있어서 그 때는 그게 진짜 신고해야하는 일이구나 그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사례 4)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이 경험한 피해가 신체적상해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의 폭력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험을 통해 경찰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오히려 신고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폭력이 더 심해졌으니까..겁이 나서 나중에는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 1)

> 그 사람이 조사를 받고 뭐 구속 되고 하는 과정이, 좀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도 제 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고 하는데 임시조치를 요청해도 그게 너무 늦으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면 무서운 거죠. 해코지 할까봐 이번에 제가 신고한 후 거의 20일 만에 구속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길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인데.. (사례 1)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탈출을 하더라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피해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단지 보호의 목적을 넘어 자립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사람을 피해서 제가 지금 여기를(주거지) 떠난다고 해도 저는 계속 일을 할 거에요. 계속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사례 1)

○ **가해자와의 관계해소 인식**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헤어지자는 요구도 했었지만 가해자와의 관계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유는 주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연인관계에서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법적 제제조치나 환경조성이 매우 시급해 보임.

헤어지자고 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막 싸운 적도 있었어요. 바다에 막 뛰어들고, 죽는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고..집에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헷고지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만났어요. 헤어지지 못해서.. (사례 4)

이 사람은 항상 칼을 소지하고 있어요 차에. 사시미칼...그 칼을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벗어나는 게 저는 목숨을 건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사례 1)

그냥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죽는다고 항상 그랬었어요. 죽는다고..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차도로 뛰어든다고 제발 와달라고, 자기들도 힘들다고 너 안 오면 안 될 거 같다 이래서 항상 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한 것도 있죠(사례 2)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가해자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었음.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자립지원 방안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다니던 직장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만 뒀어요. 그 사람이 늘 저의 생활을

> 의심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서 생활했는데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만큼은 안 돼요... 그래도 일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례 1).

한편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폭력이 지속되는 스토킹의 경우도 발견되었음.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고 위축되게 만드는 형태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였음.

>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항상 저에 대해 안 좋은 말 하고 다니고, 제가 이상한 짓하고 다닌다고 거짓말까지 쳐 가면서.. 애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 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사례 2)

> 제 주변사람들한테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실 제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제가 피해자인건 분명한데 제가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사례3)

○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 인식**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데이트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집착하고, 핸드폰 검사하고 그런 걸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때리고 뭐 그런 거만 폭력인줄 알지, 정의도 모르고 있을 거에요. 당시 그걸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을 했으면 제가 이 친구를 안 만났을 거 같거든요. (사례 4)

남자들도, 자기 행동이 나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데이트폭력이 처벌이 되는 거고 자기행동이 진짜 나쁜 거라는 걸 알면 안 하지 않을까요? (사례 3)

사전에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양성평등교육과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남자랑 여자랑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자기 물건쯤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 2)

폭력예방 교육이나 홍보 등 인식개선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폭력발생 예후나 대응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전달에 대한 요구를 높게 드러냈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되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3)

(2) 실무자 FGI

실무자 FGI는 현장에서 폭력피해여성 지원과정에서 폭력피해자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된 폭력피해자 경험 인식,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인식 , 그리고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데이트폭력피해자 경험 인식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비혼 뿐만 아니라 기혼자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

문에 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폭력의 원인이나 책임소재를 떠나 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법적 제도적 지원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혼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서 외도를 했는데, 이별을 통보하니 이 남자가.. 이 남편한테 알리겠다 협박하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 여자는 오갈 데 없고 아이들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최근에 부쩍 늘었어요. 미혼일 경우에는 연락을 끊고, 집도 월세니까 이사를 가던지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그러면서 떠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혼자 케이스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죠. (실무자 A)

> 실제적으로 한사람은 가정이 있고 한사람은 가정이 없는 이런 상태...이런 둘이 만나서 한쪽이 헤어졌으면 할 때 상대측에서 계속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가정폭력도 아니고.. (실무자 D)

현장실무자가 인식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통제경험은 폭력피해 당사자가 사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거시적으로 피해자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가해자의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음.

>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얘(피해자)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제 폭력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변관계를 다 단절 시키는 게 통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요. 그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피해자가 점점 고립 되는 거에요. 나 혼자밖에 없는 상태로..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는 여자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마구 내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또 얘(피해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고립시켜놓고. 모든 인간관계, 이 사람이 가진 네트워크를 다 끊어 놓는 게 가해자의 1순위 통제 수준인거죠. (실무자 C)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인식

현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만한 마땅한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은 '사실혼' 이나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내용을 재정의해야 지원이 가능함.

> 일단은 여성인거고 폭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건 가정폭력이다..아니면 사실혼으로 해서 처리는 해 주고 있어요. (실무자 D)

> 보호시설은 항상 사람이 들어왔으면 입퇴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가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실무자 A)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1366에서 최장 1개월 간 보호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피해자 측면에서나 운영측면에서 현장 실무자의 인식은 부정적 견지를 가지고 있음. 가정폭력피해자와 공동으로 생활하려는 조치보다는 보다 새로운 보호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정부 종합발표에 보면 1366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1개월 동안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1366은 사실 긴급피난처고 여기에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이나 자녀가 있거든요. 아주 위험해서 신변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인데..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이 분들은 일단 보호보다는 빨리나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해요..그러다보면 긴급피난처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외부와 소통이 편하게 되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걸(신변노출에 따른 위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어요. (실무자 A)

> 입소하신 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가정폭력 보

호시설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외출금지를 요구할 수도 없구요. 휴대폰 사용 금지도 사실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이 입소해있는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실무자 A)

학교의 학생상담 창구가 본래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음. 또한 현장실무자의 역량도 개선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 상담과 폭력피해자 지원을 설계해야 할 실무자들의 역할은 그들의 역량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학교에서 양성평등상담소 이런 곳이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해줘야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곳이 00 대학교가 있기는 한데 다른 학교들은 아예 없거나 학생상담소가 이 기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성폭력이나 성차별,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도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에요. (실무자 C)

상담하시는 실무자들도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피해자인 여자애가 상담 받는 걸 봤는데 가급적이면 쟤(가해자) 앞길을 좀 막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니가 이렇게 계속 하면 더 힘들어져. 너를 위해서 다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거나 크게 만들지 않고, 학교 상담소 내에서 처리하되, 니가 좀 참아라. 이런 메세지를 계속 주는 거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양평원에 전문 강사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외부에 예방교육 보다도 그렇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 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폭력예방교육을 해요. (실무자 C)

○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 인식

현장실무자들은 데이트관계에서 통제경험이 당사자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음. 이는 성별을 떠나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통제가 신체폭력까지 발전되는 과정의 위험성은 많지만 여성도 역시 상대를 통제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상대가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뭐하는지 계속 남자친구를 통제하면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하는 통제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실무자 B)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현장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장의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데이트폭력예방교육이 다른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00대학교 같은 경우는 데이트폭력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는 강사분께 그 분의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 과에만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00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에 들어갔었고. 00대학교는 사회학과. 그리고 00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고 있어요. (실무자 C)

> 현재 학교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교육의뢰가 들어올 때 그쪽에서 뭐라고 요청이 들어오느냐 하면, 짧게, 재미있게 해달라. 그니까 그냥 의무감인거죠.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내가 받았다는 싸인만 필요한.(실무자 C)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보에 취약한 대중 일반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데이트폭력은 보이스 피싱처럼 딱 문법이 있어요. 그걸 인지하고만 있으면 이게 데이트폭력의 전조증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드라마나 동영상..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하던지 해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 B)

3. 소결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허용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음. 즉,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가부장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고 폭력에 대해서도 허용적이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6%의 참여자들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유형별로는 통제경험 62.9%, 언어 · 정서폭력 40.7%, 신체폭력 27.4%, 성폭력 35%임.

○ 통제경험이나 언어 · 정서폭력의 경우에는 성별을 불문하고 빈번하게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여성의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음(신체폭력 : 여성이 남성보다 11.4%p높음. 성폭력 : 여성이 남성보다 17.7%p 높음).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경험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실제 충북지역 데이트폭력 피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81.3%로 전국 74.2%에 비해 7.1%p 높음.

○ 문제는 통제경험이나 언어 · 정서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전조증상처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임. 선행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바 있음(Karakurt & Silver, 2013; Mclewin & Muller, 2006). 본 연구에서도 처음 폭력이 발생한 시기가 사귄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아 폭력발생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본 연구 참여자 중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대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폭력이 발생한 사유중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폭력발생장소가 ‘본인 또는 가해자의 집안’ 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폭력이 은폐되기 쉽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폭력행위 근절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6% 미만으로 사실상 신고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이외에 피해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 당사자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피해자들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본인이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범죄 우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피해에 더욱 노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공유로 거주지나 직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 후 가해자에 대한 제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의 신변을 더욱 위협하고 있었음. 이런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피해자 보호장치가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데이트폭력 발생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법의 제제를 받지만 형법의 경우는 명백한 상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를 제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점과 현재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이 부재한 점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범위 내 지원을 위해 피해자를 ‘사실혼’ 으로 재규정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냈음. 정부종합발표에서 제시한 스토킹 처벌법이나 경찰의 가해자 제제조치도 중요한 전략이기는 하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정부는 입법마련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한 1366의 초기단계 상담 및 피해자 보호는 데이트폭력

피해의 특성상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보호하기에 신변노출을 비롯한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긴급피난처의 확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주거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60대의 폭력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과거 데이트폭력이 주로 미혼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는 청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대상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Ⅵ. 논의 및 제언

1. 데이트폭력관련 정책 방향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CBWF

1. 데이트폭력관련 정책 방향

○ 연인 사이 또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 현행 법제도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수한 속성을 반영한 법제도의 마련, 혹은 정비가 필요해 보임.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입법마련이 가장 우선순위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기 제시된 정부합동발표의 로드맵에 근거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데이트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은 데이트폭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해경험 비율이 높고 심각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주목할 점은 신체적 상해가 없는 통제경험이나 언어·정서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각한 폭력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상대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점임.

○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생애과정별, 대상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홍보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도 적극 검토해야 함. 아울러서 정부차원의 입법마련이 시급하게 다뤄질 필요 있음.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 현재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제는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 처벌법」 등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임.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입법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는바 최근 데이트폭력 관련 법제마련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충북의 대응전략을 다루었음.

1) 정부 차원

(1) 데이트폭력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귄 후 6개월 이내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혹은 이별을 통보하였거나, 헤어지고 난 후 폭력 발생비율이 높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신체폭력 14%). 이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이와 관련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 완료되어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있음.

-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 범죄의 해당 유형은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직장·학교나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스토킹 범죄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라는 점에서 최근의 입법마련은 환영할 일이지만 스토킹의 정의와 범죄 유형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접근에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예를 들어 데이트상대로부터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 처벌의 근

거는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보호시설 입소에 있어서의 제한은 여전히 존재함.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과 기본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상의 대상범죄를 추가하자는 것임. 앞서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방지법의 대상 범위에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데이트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 보는데 사실상 다양한 데이트 관계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로서 명문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실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데이트관계 입증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이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11].

(2) 가정폭력전과정보제도(클레어법) 도입 검토

○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다수는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음(79.4%). 물론 전과의 종류가 동종범죄인지, 동일대상에 대한 범죄경력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 혹은 전과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대두시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클레어법'을 통해 전과정보를 데이트상대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데이트 폭력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데이트상대에 관한 전과정보를 제공하여 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

- 이 법은 개인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음. 단지 데이트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전과정보, 즉,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의 도입에 앞서 영국의 시행과정

11) 입증방법으로 제시되는 여섯 가지 질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최소한 서로가 사회적으로 상호간에 결합되어 있고 자유로운 교제관계에 있었는가? 둘째, 얼마나 오랫동안 데이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가? 셋째, 상호관계 만남의 이유와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넷째, 상호간에 만남지속에 대한 향후 기대는 무엇인가? 다섯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서로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상호간 데이트관계를 유지하거나 헤어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임.

과 착오,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부합성 검토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음.

2) 충청북도 차원

(1)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실효성 확보**

- 지역차원의 실무매뉴얼 마련,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을 위한 상담지원 매뉴얼이 개발 중이며 곧 상담소에 배부될 것임. 이는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action plan을 담게 될 것임.
- 주목해야할 점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임.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1366을 경유하여 경찰에 수사도움을 받는 것인지, 경찰에 신고하여 1366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거치는지, 상담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보호시설이 없는 남부권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 수도권까지 피해자를 이송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접근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기관차원에서의 다양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실무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건발생시 신속을 기하기 위해 지역의 지침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유관기관별 참여가 요구됨.
- 아울러 현장종사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현장종사자들의 민감성은 피해자 구호의 가장 중요한 창구역할임. 앞

서 실무자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장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라고 해서 여성문제 혹은 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해자가 보내는 시그널을 즉각 파악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폭력상황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자의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학교, 기업 등 교육현장에 투입해야 할 것임. 데이트폭력은 다른 폭력 유형과는 달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 그리고 보복범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폭력예방 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실시되어야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법안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는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여 강사를 양성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운영**

-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은 사실상 생애과정별, 대상별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임. 특히 노년층의 높은 폭력경험률과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전과자 비율을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좀 더 차별적인 방식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이하에서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생애과정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을 차치하고 특별히 차별적으로 접근해야할 두 집단에 대해서만 다루었음.

노년층

- 일반적으로 폭력예방 교육이 학교, 직장 등 비교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폭력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60대 이상의 집단은 이들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성역할태도나 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이들의 폭력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이 폭력허용도 역시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방증하는 결과라 할 것임. 따라서 노년층 대상의 데이트폭력 예

방교육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노년층의 활동반경이 주로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의 경로당을 활용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교육운영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범죄경력자

- 치료패러다임에 입각한 범죄경력자 대상의 폭력예방교육과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함. 앞서 충북지역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의 전과경력을 살펴본 결과 79.4%가 전과자임이 드러났음. 전과의 종류가 동종인지, 동일대상에 대한 범죄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가해자의 범죄 전력이 유사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간의 연구결과는(소병도, 2016; 류병관, 2014) 데이트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 있음. 앞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폭력이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예측됨.

- 아울러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보복성범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한성훈, 2017; 류병관, 2014; 오윤성, 2017).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범죄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교정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폭력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함.

- 이와 관련하여 범죄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폭력을 쓰는 가해자는 심리적 불안과 애착의 결핍에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음(오윤성, 2017). 그의 주장대로라면 범죄경력자 대상의 폭력 예방교육은 교정 보다는 치료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문제임. 현재 범죄경력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교정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바 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사업지원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함.

(2) 데이트폭력예방 인식개선

○ 데이트폭력 예방 홍보 강화

-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사업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충북도내 유관기관 등에 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최근의 데이트폭력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상담실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정보를 제공받는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중에게 정보전달 창구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들은 데이트폭력 실태 및 심각성에 대해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드러난 심각한 문제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상황만 전달할 뿐,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폭력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피해를 당하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충북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거나 지역방송에 송출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전방위적 홍보방법이 필요함.

- 방법적으로는 '데이트폭력예방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과 같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방법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지역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함.

- 아울러 상담소 및 수사기관과 연대한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이 상담과 수사가 필요한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피해자 보호 및 인프라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 군 단위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이 필요함.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 발생 시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을 통한 사건 초기개입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초기단계와 상담보호단계, 보호치료단계에 따라 1366상담소를 비롯하여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가 중요한 지원체계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 여성폭력 상담소는 11개 시·군 중 5개소로(청주, 충주, 음성, 제천, 영동) 모든 지역에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며 보호시설은 4개소(청주, 진천, 제천, 충주)에 불과함. 현재 1366의 현장출동 상담을 통해 시외지역 상담을 일정부분 감당하고 있기는 함.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의 여성폭력 상담과 보호, 교육, 홍보 등은 지역단위에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함. 「가정폭력방지법」 제 6조에서도 상담소가 단순 상담 이외에도 피해자와 동반아동의 보호,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에 명시하고 있음. 즉, 지역의 여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

-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은 4개소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남부권은 보호시설이 부재한 상황임. 이는 지역에서 폭력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함. 따라서 시군단위별 상담소 설치가 어렵더라도 권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에 보호시설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인프라 취약지역 시설다기능화 방안 검토

- 앞서 충북지역의 부족한 피해자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 이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인프라 취약지역의 경우 기 시설의 기능재편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농촌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리적 특성을 가짐. 즉, 각종 시설을 각 종별로 모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 도시지역의 경우 일정 면적 내에 교통이 발달해있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은 넓은데 교통은 매우 불편하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읍내에 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음(김진우, 2017).

- 따라서 이들 농촌 지역에 산발해 있는 시설들이 자기 소관 대상 이외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게 서비를 제공하는 방식임. 이는 1970년부터 유지되어 온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화 및 분업체계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매우 적은 인구규모로 구성된 농촌 지역에서 시설 종별에 따라 모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려할 여지는 충분함.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시설은 신축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대상 외에 다른 기능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여건조사와 검토를 통해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 여성안전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

- 여성폭력 지원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북에는 현재 5개의 상담소가 운영 중임. 11개 시·군에서조차 상담소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단위의 여성안전은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실태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노년층의 폭력 경험률이 높은 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임.
-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안전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시·군 단위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주민자치조직과 연대하여 의

료기관, 수사기관, 상담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기초단위에서의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도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역차원의 차별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요구됨. 정부발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발생시 1366 긴급피난처에서 최장 1개월 간의 보호를 명시하였음. 그러나 1366센터의 긴급피난처는 임시피난처 개념으로 7일 이내의 기간 안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당사자 본인, 혹은 자녀와 함께 일시 피난하였다가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되거나 귀가하는 등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한 달간 보호하게 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를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긴급피난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 대안을 제시함. 첫 번째 1366 긴급피난처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장할 경우 현재 2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를 확충해야할 것임.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기간도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일주일이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12]. 현재 보호시설의 피해자보호의 범위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향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나 지역에서 법적 근거 부재의 이유로 피해자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 이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역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 「가정폭력방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12) 데이트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요건은 긴급피난처와 마찬가지로 신변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준용해야 할 것임.

검토해 볼 수 있음. 물론 법률상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이 예외라고 볼 수 없음. 임대주택의 경우 보호시설과는 달리 외부활동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폭력피해자의 특성상 보호 및 자립 준비를 위해 별도의 거주공간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앞서 연구에서 피해자들이 단지 보호만이 아닌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들에게 임대주택 제공이 필요한 이유라 할 것임.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

-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를 가짐.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설문조사는 700개 표본으로 충북지역 전체의 대표성을 설명하기에는 sample size가 작고 질적 조사에 포함된 당사자 사례수도 4cace로 동질적인 피면접자 대상의 인터뷰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1개 시·군, 성별, 연령을 고려한 최소단위의 표본추출을 바탕으로 충북의 데이트폭력 경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함. 아울러 눈덩이 표집으로 진행된 당사자 인터뷰과정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인터뷰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힘.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자 FGI를 통해 현장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나 향후 인터뷰당사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효진・박지환(2013).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9(3), 27-54.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권혁남(2017). 데이트폭력 문제 :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에 관한 연구.

김 혁(2016),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 연구 16(2).

김성언(2010). 폭력피해와 성차 : 폭행, 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3. 103-134.

김진우(2017).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1). 125-145.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4(1), 187-197.

대검찰청(2017).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류병관(2014),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3). 91-114.

박선영・김현아・김정혜(2016), 한국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일심포지엄.

배수희・손승영, 2016, ‘데이트 성폭력’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26(1). 93-124

서경현・김유정・정구철・양승애・김보연(2010),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서경현・이경순(2002), 데이트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건강 7(3), 353-368.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소병도(2016).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16(2). 61-86.

신상숙(2018).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포겪의 연속선:통합적 접근의 모색.

심진경(2011). 여성폭력의 젠더정치학.

오세연・곽영길(2011), 데이트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연구

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1(1), 3-27.
오윤성(2017).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지금이책.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 36(4), 49-61.
장민선(2015),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제9권, 한국법제연구원.
정윤주(2008), 데이트폭력 구성과 대응에 관한 연구:20대 여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숙(2007),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유, 사회복지연구, 32, 269-298.
하예지・서미경(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한국여성의전화(2016),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017). 2017 분노의 게이지

Altman, B. M.(2001), Disability Definitions, Models, Classification Schemes, and Applications, In Gary L. Albrecht, Katherine D. Seelman, and Michael Bury,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Thousand Oaks, CA: Sage Morris. J.(2001). Impairment and Disability : Constructing an Ethics of Care That Promotes Human Rights, Feminism and Disability, 16.
Slota, N. E., & Martin, D.(2003),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life course theory research. *Disability Study Quarterly*, 23.
Amar, A. F., & Gennaro, S. (2005), Dating violence in college women:Associated physical injury, healthcare usage, and mental health symptoms. Nursing, 54(4), 235-242.
Beyer, J. M., Leonard, J. M., Mays, V. K., & Basile, K. (2000),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adult revictimization assessed in a nar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women and men. Violence and

Bictims, 17(6), 639-654.

Karakurt, G., & Silver, K. e. (2013),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 The role of gender and age. Violence Victims, 28(5), 04-821.

Lewis, S, F., & Fremouw, W. (2000), Dating violence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Lundberg-Love, P. and Geffner, R. (1989), Date rape : Prevalence, risk factors, and a proposed mode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ses. 169-184.

Mackinnon, C.A.(198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Mclewin, L., A., & Muller, R, T. (2006), Childhood trauma, imaginary companions, in childhood. Psychological Reports, 107(1), 163-172.

Molidor, C.,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o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an, 4(2), 180-194.

Ronfeldt, H. M., Kimerling, R. and Breslin, F. C.(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ng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Sheman, L, and R. A. Berk(1984), The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Police Foundation.

Stets, J. E. (1992),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97-114.

Teen Voce(2006), Dating violence power and control wheel, safe House Center.

경찰청 통계자료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news/4986704

법제처 www.moleg.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60258
청주여성의전화 내부자료(2018. 7)
충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8. 5)
통계청 www.kostat.go.kr

조사표번호						

충북 데이트폭력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관리사항	
기관명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연구자/문의처	한애경 연구위원 전 화 : 043-285-2616 이메일 : hak119s@cbwf.re.kr

안녕하십니까?

충북여성재단은 충청북도 지역실정에 맞는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 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충청북도 비혼여성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에 기여하고자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기준이 없으므로 솔직한 자신의 의견에 따라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원칙에 의해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CHUNGBUK WOMEN FOUNDATION

연구 참여 및 자료 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하며 응답내용을 추후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역	1) 청주 2) 충주 3) 제천 4) 단양 5) 음성 6) 진천 7) 괴산 8) 증평 9) 보은 10) 옥천 11) 영동		
혼인상태	1) 기혼(현재배우자있음)_☞조사중단 2) 이혼 3) 사별 4) 사실혼(동거포함) 5) 미혼 6) 기타		
데이트관계 유무(최근1년기준)	1) 현재 있다 2)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3)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_☞조사중단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 _____세_(20세 미만 조사중단)
장애유무	1) 없음 2) 있음(장애유형_____, 장애정도 : ☐ 중증 ☐ 경증)		
거주지	1) 충북 2) 타지역(학교 및 직장으로 현재 충북에 주소만 둔 경우) 3) 기타( )		

Ⅰ. 사회적 역할과 폭력에 대한 생각

1. 다음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집안일은 여자가 주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의 생계부담 책임은 남자가 우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남자의 의견이 여자보다 우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데이트상대를 폭행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폭력행동을 얼마나 허용할지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절대 그럴수없다	그럴수 없다	그럴수 있다	매우그럴 수있다
1	데이트상대가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협박한다면 폭행 할 수 있다 (폭행= 언어 혹은 신체적 폭력 이하 동일)	①	②	③	④
2	데이트상대가 술에 취해 심하게 술주정을 한다면 폭행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데이트상대가 '재수 없다'는 등 폭언을 한다면 폭행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데이트상대가 나를 속이는 행동을 한다면 폭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데이트상대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는 것을 목격 한다면 폭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면 폭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하고만 있어달라고 보챈다면 폭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약속시간에 늦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폭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한다면 폭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Ⅱ. 폭력경험

1. 다음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최근1년 기준) **데이트 상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자주 있다
1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2	나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4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①	②	③	④
5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했다	①	②	③	④
6	써클이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①	②	③	④
8	나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1-1. (위 1번에서 제시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모르겠다 2) 사귄 후 1개월 미만 3) 사귄 후 1개월~3개월 미만
4) 사귄 후 4개월 ~ 6개월 미만 5) 사귄 후 6개월 ~1년 미만 6) 헤어지자고 이야기 한 후
7) 헤어지고 난 후 8) 기타(적어주세요)

2. 다음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정서적 갈등을 다룬 내용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최근1년 기준) **데이트 상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자주 있다
1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2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①	②	③	④
3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①	②	③	④
4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을 했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날 때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	①	②	③	④
7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 했다	①	②	③	④
8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했다	①	②	③	④
9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0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 등을 가져갔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했다	①	②	③	④

2-1. (위 2번에서 제시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모르겠다 2) 사귄 후 1개월 미만 3) 사귄 후 1개월~3개월 미만
4) 사귄 후 4개월 ~ 6개월 미만 5) 사귄 후 6개월 ~1년 미만 6) 헤어지자고 이야기 한 후
7) 헤어지고 난 후 8) 기타(적어주세요)

3. 다음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최근1년 기준) **데이트 상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자주 있다
1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삐거나 멍이 든 적 있다	①	②	③	④
5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진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진 적 있다	①	②	③	④
11	상대의 폭행으로 기절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3-1. (위 3번에서 제시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모르겠다 2) 사귄 후 1개월 미만 3) 사귄 후 1개월~3개월 미만
4) 사귄 후 4개월 ~ 6개월 미만 5) 사귄 후 6개월 ~1년 미만 6) 헤어지자고한 후
7) 헤어지고 난 후 8) 기타(적어주세요)

4. 다음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폭력을 다룬 내용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최근1년 기준) **데이트 상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자주 있다
1	내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 있다	①	②	③	④
2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4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5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강요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6	강제로 섹스를 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4-1. (위 4번에서 폭력 경험을 한번이라도 한 경우)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모르겠음 2) 사귄 후 1개월 미만 3) 사귄 후 1개월~3개월 미만
4) 사귄 후 4개월 ~ 6개월 미만 5) 사귄 후 6개월 ~1년 미만 6) 헤어지자고한 후
7) 헤어지고 난 후 8) 기타(적어주세요)

4-2 (위4번에서 4번 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거나 혹은 유포를 빌미로 협박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없음 2) 있음

5.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일상적인 의견차 2) 중대한 의견차 3) 특별한 이유 없음 4) 데이트상대의 주취상태
5) 나의 주취상태 6) 서로에 대한 평가 시 7) 이별통보 8) 기타( )

6. 폭력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 학교 2) 직장 3) 본인 혹은 상대의 집안 4) 숙박업소
5) 길거리 6) 음식점 7) 기타( )

7. 폭력경험 당시 경제활동 상태를 묻는 문항입니다. 폭력경험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본인_____ 데이트상대 _____

보기						
	① 없음	② 판매직	③ 관리직	④ 농업·어업	⑤ 전문직	
	⑥ 기능직	⑦ 사무직	⑧ 단순노무직	⑨ 군인	⑩ 학생	⑪기타( )

8. 폭력이 발생한 **현장에서 귀하의 대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_☞8-1번으로	②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③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④ 맞서서 대항했다
⑤ 헤어지자고 했다	⑥ 경찰에 신고했다_☞8-2번으로
⑦ 친구,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⑧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⑨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⑩ 종교기관에 알렸다
⑪ 기타( )	

8-1. (8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 2) 창피해서
3)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4)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5)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게 싫어서 6) 주변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7)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8) 상대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 믿어서
9)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10) 기타( )

8-2. (8에서 ⑥번에 응답한 경우) 신고후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1)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 2) 협의를 종용했다 3) 사건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4) 고소하라고만 했다 5)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6) 기타( )

8-3. (8에서 ⑥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귀찮아서 2) 신고/고소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3)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 수치심 또는 창피해서 6) 증거가 없어서
7) 상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8)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두려워서
9) 보복이 두려워서 10)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11) 기타( )

8-4. (8에서 ⑦, ⑧번에 응답한 경우) 데이트폭력을 겪고 난 후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2) 사랑싸움이니 둘이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 했다
3)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4) 네가 반응을 달리하면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5) 네가 잘하면 상대도 변한다고 했다 6) 본인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다
7) 기타( )

8-5. 데이트상대가 폭력을 처음 행사한 후 **데이트 상대의 폭력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 특별한 변화 없이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　　2) 폭력을 행사하는 횟수가 늘었다
3) 폭력의 강도가 심해졌다　　4)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확대되었다
5) 폭력을 행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6) 폭력의 강도가 약해졌다
7) 폭력의 종류가 줄어들었다　　8) 기타(적어주세요　　)

8-6. 데이트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귀하가 겪은 **심리적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 없다　　2) 죽고 싶다는 생각
3)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4)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함
5) 데이트상대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6) 데이트상대를 죽이고 싶은 생각
7) 분노심과 적개심　　8)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림
9)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10) 수치심
11) 기타(　　)

8-7. 데이트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귀하가 겪은 **신체적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 없다　　2)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3) 찢어지는 찰과상　　4)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5)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 온몸 타박상　　6) 폭력으로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심해짐
7) 중절수술　　8) 만성통증(두통, 요통 등)　　9) 기타(적어주세요　　)

8-8. (위의 8-6과 8-7에서 ①번을 제외한 모든 경우) 위의 증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이나 병원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1) 받은 적 있다_☞8-9번으로　　1) 받은 적 없다_☞8-10번으로

8-9. (위의 8-8에서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 상담이나 진료의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일반적인 상담　　2) 정신과 진료　　3) 외과적 통원치료　　4) 외과적 입원치료
5) 기타(　　)

8-10. (위의 8-8)에서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2)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3) 돈이 없어서　　4) 폭력이 알려질까봐 창피해서
5) 데이트상대가 가지 못하게 해서　　6) 기타(적어주세요　　)

9. 폭력이 있었던 당시의 상대방과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1) 유지하고 있다_☞9-1번으로 2) 헤어졌다

9-1. (위 9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귀하가 데이트 상대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데이트 상대를 사랑해서
2) 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서
3) 폭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4)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5) 결혼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6)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7)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8) 헤어진다고 얘기하기가 두려워서
9) 상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10) 상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11) 기타( )

10. 다음은 우리지역 여성폭력 상담 시설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곳을 보기에서 골라 체크하세요(중복응답가능)

보기	① 여성긴급전화 1366 ② 충북해바라기센터 ③YWCA여성상담소 ④가정폭력상담소 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⑦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⑧ 성폭력상담소 ⑨ 한스심리상담센터 ⑩ 여성 보호시설 ⑪ 기타( )

11.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현재 데이트폭력 정책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 항		적정성				필요성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1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규정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경찰관의 응급조치(분리, 접근금지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피해자 신변보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경찰대상 정기 직무교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상담소, 보호시설)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데이트폭력 관련 예방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데이트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대중매체, 온라인, 캠페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Ⅲ.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소득없음 2) 50만원 미만 3) 50~100만원 미만
4) 100~200만원 미만 5) 200~300만원 미만 6) 300~400만원 미만
7) 400~500만원 미만 8) 500이상

2. 귀하의 학력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 고졸이하 2) 대학재학중 3) 대학졸업 4) 대학원 이상

3. 귀하는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모두 V표 해주세요

1) 본인 2) 아버지 3) 어머니 4) 할머니 5) 할아버지 6) 형제/자매
7) 친인척 8) 이성친구(데이트상대 포함) 9) 동성친구(데이트상대 포함)
10) 기타( )

4. 귀하의 직업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자영업 4)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서 2018-02

데이트폭력과 충북의 대응전략 과제

발 행 일 : 2018년 9월
발 행 인 : **권 수 애**
발 행 처 : **충북여성재단**
(2878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TEL 043-285-2426~8
FAX 043-285-2429
ISBN (979-11-962189-8-0 93330)

제 작 : 사회적기업(주)새움 043-224-1019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충북여성재단에 있습니다.